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13. 8.

국무조정실

목 차

I.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1
2.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및 변천	4
※ 해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6
II.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10
III.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1. 규제영향분석서의 기능	14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 및 방법	14
3.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한 규제심사	16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서식(예시)	18
▣ 평가요소별 작성요령	22

I .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요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

1-가.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①항 5호)

* OECD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신규 혹은 기존규제의 비용과 편익과 효과를 조사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정책 도구”로 이해·정의하고 있음(Building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 2008)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시 규제 및 비규제대안(alternatives to regulation)을 망라하여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토록 하여 합리적 규제 의사결정(regulatory decision-making)을 유도

1-나. 규제영향분석의 목적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 제고**

- 규제의 내용에 따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르므로, 다양한 규제 및 비규제대안의 광범위한 비교검토를 통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고 부작용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품질높은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 △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효과 없이 법제도상 완결성만을 추구하는 규제
- △ 지나치게 획일적·경직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의 규제
- △ 규제집행능력·자원 부족으로 집행가능성이 낮으나 벌칙만을 강화하는 규제 등의 신설·강화를 방지

○ 규제담당자의 행정 책임성 제고

- 규제담당자의 행정책임은 단순히 법제도상 미비나 흠결이 없도록 만드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행정책임을 피하기 위한 규제의 신설·강화 방지 필요

-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기존규제의 정책목적 달성정도, 규제준수율, 규제비용의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규제자가 납득가능한 규제대안 설계 및 비규제대안을 발굴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문제해결 노력을 하게 함으로써 규제담당자의 행정책임 제고

* 규제의 문제점·효과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생산되고 환류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집단의 의견과 정보 등을 더 나은 규제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

-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담당자가 형식적 행정책임은 물론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 행정책임을 이행토록 하기 위한 수단

1-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토록 규정(법 제7조①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토록 규정(법 제7조②항)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규정(법 제7조④항, 시행령 제6조④항)

< 행정규제기본법 >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여부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6조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① 삭제<2006.3.31>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및 변천

2-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도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6)」,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1994.1)」, 「경제법령 사전심사제도(1995 ~ 1997)」 등에서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심의 등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 1998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법적 근거를 가진 규제개혁의 핵심적 수단으로 도입·운영
 - *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8개 항목 20개 요소, 비중요규제는 5개 평가항목 별로 분석토록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06.7)
 - * 종전의 복잡다기한 평가항목·요소를 조정하기 위해 종전의 8개 항목 20개 요소를 3개 항목 8개 요소로 통합·단순화
 - *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관보에 게재토록 하고, 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등 대국민 공표 의무 강화

2-나. 지침개정 주요내용('08.12)

○ 평가항목 및 요소 조정

기존 평가항목 및 요소	조정 평가항목 및 요소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1-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1-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3-나. 규제의 명료성 3-다. 이해관계자 협의 3-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3-2. 이해관계자 협의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중소기업 영향분석 보완

- 기업규모에 따라 행정규제로 인한 부담의 상대적 차이를 고려토록 하여, 규제집행의 실효성과 규제품질의 제고를 도모

* 미국의 Regulatory Flexibility Act를 우리의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접목·수용

2-다.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특징

- OECD 제국 등 많은 국가가 규제영향분석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행정규제기본법’을 두고,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든 행정부처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심사’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

※ 해외의 규제영향분석 제도

국가	분석기법/ 실시년도	도입근거	분석대상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	對 인간 공개	사후 모니터링
호주	B/C, 1985	각료회의 결정, 일부법률	법률안, 하위법령안, 국제 조약안 및 경쟁이나 비즈니스에 규제적 영향을 주는 결정	모든 규제	공개	개별사안별
오스트리아	F/A, 1992	연방대법관청지침	법률안, 하위법령안	일부 규제	비공개	없음
벨기에	-	-	모든 보건, 안전, 환경규제에 대한 계량적 위험 평가	-	-	-
캐나다	SEIA(1978)B/C(1992)	금융정책법에 근거한 재정위원회 결정	하위법령안, 법령과 주요정책에 대한 유사규제영향분석	모든 규제	공개	매뉴얼에 의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체코	B/C SEIA(2002)	정부포고령	일부 법률정부포고령 일부 하위법령의 일부 영역	법률, 정부포고령(경제경쟁보 호실 사전심사	중요부분	체계적인 모니터링 없음
덴마크	B/C 1966	수상령	모든 법률(기존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업의 경제적영향분석의 통합적 이슈	공개	약 15개 법률에 대해 3년후 리뷰
유럽연합	사례별 기법선택, 1986	-	중요 규제 및 경제/사회/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중요규제	일부 입법적 제안	공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출 등
핀란드	GIA 1970's	법률, 각료회의규정	법률안, 하위법령안	모든 규제	공개	부처별 책임하에 수행
프랑스	GIA 1996	수상포고령	모든 연방평의회회의 법령과 포고령	일부 규제	공개	-
독일	B/C, 1984	정부결의	법률안, 하위법령안 행정부내부규정(89년이후)	모든 규제	공개	기한규정이 있는 경우 사후평가

국가	분석기법/ 실시년도	도입근거	분석대상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	對 민간 공개	사후 모니터링
그리스	F/A, 1990	헌법	법률안, 하위법령안	-	공개의무없으나, 다수부처에서 공개	없음
헝가리	SEIA, 1987	법률	법률안, 하위법령안, 기존 규제	연관 규제	없음	의무조항있음
아이슬랜드	F/A, GIA(1995)	내각 결정	법률안, 하위법령안	모든 규제	의회제출시 공개	-
아일랜드	QRC, 1999	내각 편람	법률안	모든 규제	없음	없음
이탈리아	양적질적분석, B/C, 1999	법률	법률안, 하위법령안	언급은 하고 있으나 지침은 없음	비의무	지침은 있으나 운동되지 않음
일본	인허가에 대한 편익테스트, 1987	각료회의 결정	법률안, 하위법령안	일부 규제	중요규제만 공개	-
한국	B/C등 다양 1998	법률	법률안, 하위법령안, 기존규제 강화	모든 규제	공개	없음
멕시코	B/C 1992	법률	법률안, 하위법령안	모든 규제	있음	내부평가
네덜란드	GIA, 1985	수상령	중요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중요 규제	출간, 의회제출시 공개	공식적 요구 없음
노르웨이	F/A(1987), GIA(1995)	각료회의 지침	법률안, 하위법령안, 기타정책결정을 위한 제안자료	따로 언급되지는 안음, 모든 중요한 효과분석에 포함	비의무적, 공청회과정에서 대부분 공개	재정부, 감사원 등에 의한 사후평가
폴란드	다양한 기법, 1997	내각평의회 결의	법률안, 하위법령안	모든 규제	공개	-
포르투갈	F/A	정책령	일부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일부 규제	일부 분석서만 공개	없음

국가	분석기법/ 실시년도	도입근거	분석대상	경쟁·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	對 民間 공개	사후 모니터링
스페인	-	-	법률안, 하위법령안	없음	없음	-
스웨덴	B/C, C/E 등 1984	각료회의조례, 수상지침 (법률안의 경우)	법률안, 하위법령안(행정부령 포함)	모든 규제	이해당사자들에게 배포	각 정부기관의 의무(중소기업영향 평가)
스위스	F/A, RIA(2000)	연방평의회 결정	법률안, 하위법령안	중요 규제	공개	일부 RIA(수차례)
터키	RIA, EIA, 1973	행정규정안, 의회 명령	행정규정안 확정 후 결정될 예정	모든 규제 (총리령, 1998)	없음	없음
영국	비즈니스비용평가 등 1985	각료회의 결정	규제가 선택될 수 있는 모든 제안 및 기존 규제의 리뷰	모든 RIA	의회위원회최종검 토시 공개, 사후 요약본 출간	-
미국	B/C(1977) RIA(1993)	대통령령	일부 법률안 및 하위법령안	중요 규제	공개	-

<Regulatory Impact Analysis Inventory - OECD, 2004>

주)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 : 규제영향평가

GIA(General Impact Analysis) : 구체적인 방법론을 의무화하지 않는 일반적 평가

B/C(Benefit-Cost Analysis) : 비용편익분석,

C/E(Cost-Effectiveness Analysis) : 비용효과분석

F/A(Fiscal Analysis) : 규제집행상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비용을 산출하는 재정분석

SEIA(Socio-Economic Impact Analysis) :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 미국의 규제개혁 12 원칙 >

- ① 행정기관은 시장실패나 기존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 ② 새로운 규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기존의 잘못된 규제나 법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③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보의 제공 등 경제적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좀 더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
- ④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위험의 본질과 심각성 정도를 면밀히 고려하여 규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 ⑤ 규제수단의 선택에 있어서는 기술혁신의 유인,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부기관·피규제 집단이나 국민이 부담해야 할 규제집행 및 순응비용의 크기, 규제준수방식의 융통성(신축성), 분배측면의 효과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비용효과적인 규제방법 선택해야 한다.
- ⑥ 행정기관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여야 하며,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당하게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 ⑦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최선의 과학적·기술적·경제학적 정보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⑧ 피규제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방식을 그대로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방법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성과기준(performance standards)에 의한 규제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피규제자가 정해진 기준이나 목표를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융통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⑨ 주 및 지방정부에 규제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구하고, 연방의 규제명령이 주 및 지방정부에 미치게 될 영향, 특히 지방의 재원조달 능력을 평가하여 그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⑩ 다른 규제와 불일치, 상충, 또는 중복되는 규제의 도입을 피해야 한다.
- ⑪ 중소기업 및 소규모 자치단체의 규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려해야 한다.
- ⑫ 규제안을 가능한 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함으로써 규제내용의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소송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II.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I. 분석대상 규제개요	1.규제사무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하는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 신설규제는 새로운 사무명을 부여하고, 강화규제는 규제등록 시스템상의 규제사무명과 연계 - 유사한 관련 규제를 함께 영향분석하는 경우 하나의 규제사무명 부여
	2.규제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규제, 기존규제 강화, 내용심사, 존속기한 연장 인지를 구분 ○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기타 규제로 구분 *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등이고 사회적 규제는 보건·위생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3.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부처·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실·국장 및 과장급의 직책 및 인적사항을 기재 ○ 외부용역이 있는 경우 외부용역 관련자 인적사항을 함께 기재
	4.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피규제자, 이해관계인 및 관련기관 등을 확인하고 그 현황을 규모·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 * 피규제자의 수, 규모 등 명기
	5.규제존속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범위 내에서 설정(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에는 설정이 곤란한 사유를 기술
	6.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규제의 강화, 존속기한 연장의 경우 현행규제의 내용중 변경하려는(심사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 신설규제·내용심사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재 - 관련 신규조문 대비표 등은 별지로 첨부
	7.규제체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규제와 관련있는 규제체계, 주된 규제 및 근거 법령 등을 알기쉽게 도표 또는 그림으로 작성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배경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로 대처하려는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나 경위(예:사고나 재난의 발생 등)를 기술 ○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직접 및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 ○ 문제의 심각성(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 또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
	1-2.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꼭 개입해야만 할 이유 또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시장 실패) 등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할 때 규제의 신설·강화가 정당화 되므로, 우선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기술 - 기존의 규제나 정부개입이 문제해결에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기술 - 아래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 문제해결이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기술 * 비규제 대안 : 보조금 지원, 경제적 유인(관련 세금 감면 혜택, 저리 융자 등), 사회운동(각종 캠페인, 공익광고 등)의 전개 등 ○ 유사한 기존규제와 비교하여 중복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설·강화 필요성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 유사한 규제가 있는지와 중복모순 여부를 검토 * 기존 기술기준·인증과의 중복 및 표준(KS) 인용여부를 검토 ○ 필요시 국내외의 유사사례 및 제도를 원용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 ○ 상정된 대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방식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의 확대를 위해 명령지시적 규제보다는 시장유인적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규제 우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우선 * 투입기준 규제보다는 성과기준 규제 우선 *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여지 검토 -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 * 부당한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외국인투자 등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적은 규제대안 우선 - 다양한 의무이행방법에 대한 검토를 기술 * 의무이행 방법의 선택여지 부여, 민원처리기한 경과시 의제 처리 등
	<p style="text-align: center;">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로 인해 야기되는 각종의 사회적 비용을 세부항목으로 열거(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 -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을 세부항목으로 열거(측정이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계량화하여 제시) - 규제의 비용편익분석에 사용된 측정 및 추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 선택된 규제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종합 비교한 수치 제시 ○ <u>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진입제한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독과점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 등에 대해 분석
	<p style="text-align: center;">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중소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비용 유발여부를 검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확인 - 기업규모(群)별 현황 및 규제부담비율 파악 (통계 확보 어려운 경우 표본조사 실시) - 피규제기업 의견 청취 내용 적시 ○ <u>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집행시기, 집행방법 등의 차별)이 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인지 검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부담비율 비교, 피규제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업 규모(群)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검토 - <u>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부담 완화 방안 도입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u>

항 목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3. 규제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문제의 심각성, 국내외 유사사례, 국제적 기준, 사례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정한 지 검토 ○ 상위법 위임근거가 있는지, 상위법 위임범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검토 ○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리감독, 보고 절차 등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도입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행정부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부담의 감축이 가능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
	3-2. 이해관계자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여부(서면, 공청회 등 협의 방식 및 일시와 장소 등 명시) -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명시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집행자원·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검토·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의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검토(기술적 집행 가능성) - 현행 행정인력·예산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한지, 인력·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검토(행정적 집행 가능성) - 규제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필요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근거 제시 - 기존 규제가 있을 경우 그 규제의 집행실적이나 규제준수율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제시 	

III.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1. 규제영향분석서의 기능

1-가. 규제담당자(기관)

-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문제와 목표를 정확히 정의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

1-나.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는 신설·강화하는 규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입법·정책결정과정에 참여

1-다. 규제개혁위원회

- 규제의 신설·강화가 꼭 필요한지, 그 내용은 적정한지 등 규제심사 과정에 활용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대상 및 방법

2-가. 작성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대상
-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등록단위별로 실시
 - 다만,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규제별 규제영향 분석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 가능

2-나.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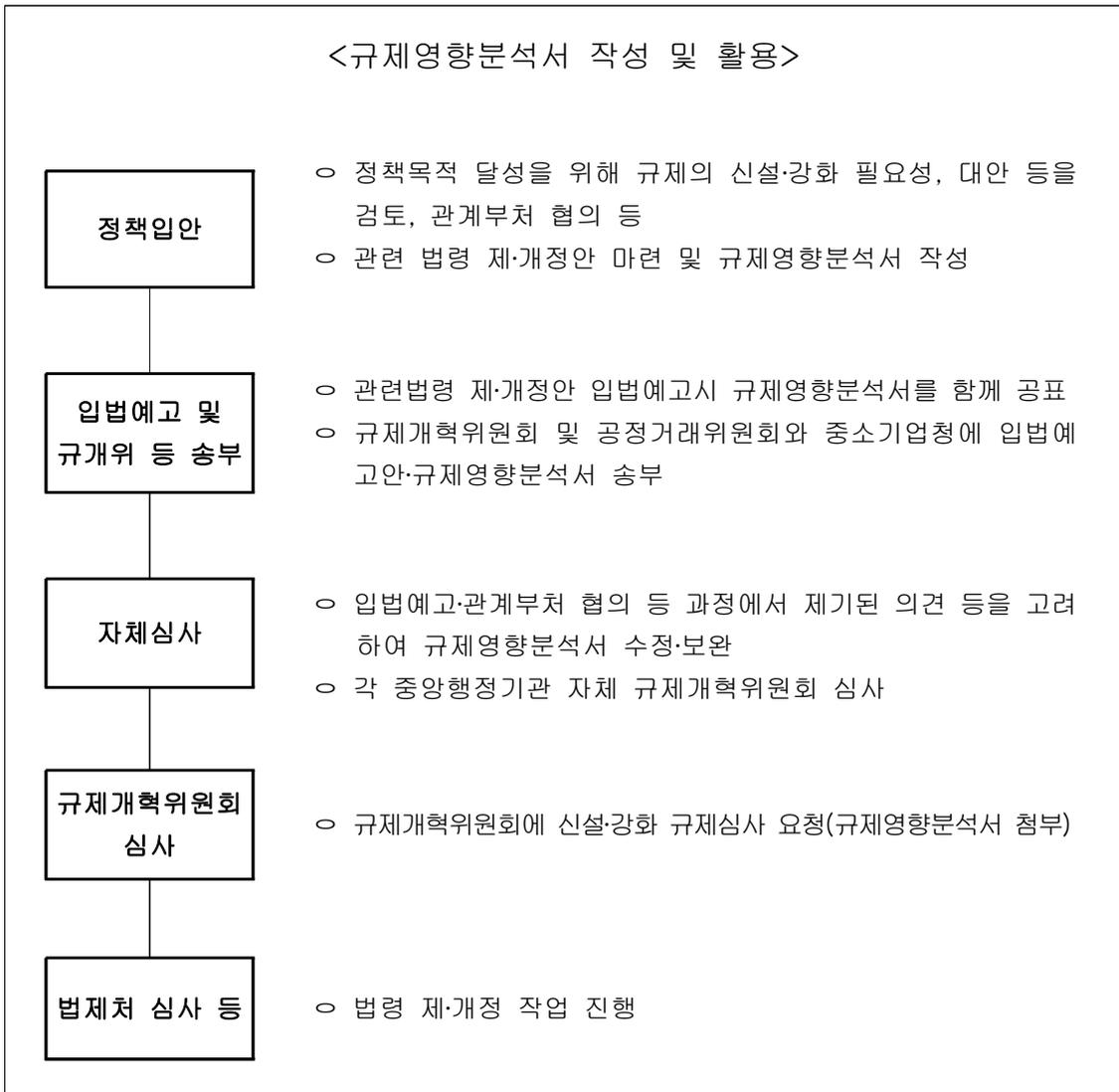
-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 정책입안 단계에서 부터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서 작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분석서를 작성
 - 소관 실·국장, 과장 및 담당관 등을 명기(규제 실명제)
 - 비용·효과 분석 / 비교 등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연구기관 용역 등을 적극 활용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3개 평가항목 7개 평가요소를 중심으로 가급적 계량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기술
 - 기존규제의 분석에 있어서도 단순히 강화·기한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분석하지 말고 가급적 제로베이스(신설규제 차원)에서 각 평가요소별 분석

2-다. 규제영향분석서의 공개 및 보완

- 작성된 규제영향분석서는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포함된 법령 제·개정안의 입법예고시 관보 또는 부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고
 - 규제개혁위원회(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입법예고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송부
 - *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경쟁 및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 기준·인증 중복성 및 국가표준(KS) 인용여부를 검토 심층분석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집중 검토
- 입법예고 기간중 피규제자,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 제·개정안 및 영향분석서를 보완
-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실시 및 보완
-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요청시 작성·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요청
 - *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긴급한 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및 활용>



3. 규제영향분석서를 활용한 규제 심사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토대로 검토 및 심사 진행

* 규제심사시 안건을 별도로 요약 작성하지 않고 규제영향분석서 원문을 활용토록하여 규제당당자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주의를 환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규제영향분석서상의 평가요소별로 충실히 분석이 되었는지 착안하여 심사 및 검토 실시

< 규제심사 착안사항 및 체크리스트 >

착안사항	점검 내용
문제가 정확히 정의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그 본질과 규모, 발생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규제의 신설·강화 등 정부의 조치가 정당화 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 기존규제의 충실한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를 만들거나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교육 및 홍보, 정부지원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는가?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통해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비교하였음을 설명해야 함 - 규제의 강도, 규제방식이 적절한 대안을 검토 했는지? - 대안이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을 촉진하는지? -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기업규모의 차이에 따른 규제 시기·방법 등의 차별화 필요성이 있는지?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계량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충실히 실시했는지?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전문성·객관성이 확보되었는지?
규제의 적정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지?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지 여부 ○ 불필요하게 피규제자에게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절차·구비서류 등을 간소화 할 여지는 없는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규제자, 이해관계인,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 제시된 의견에 대한 충실히 검토했는지?
집행의 현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집행을 위한 인력·예산 등이 확보되어, 규제가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는가? ○ 피규제자가 규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술적·현실적으로 가능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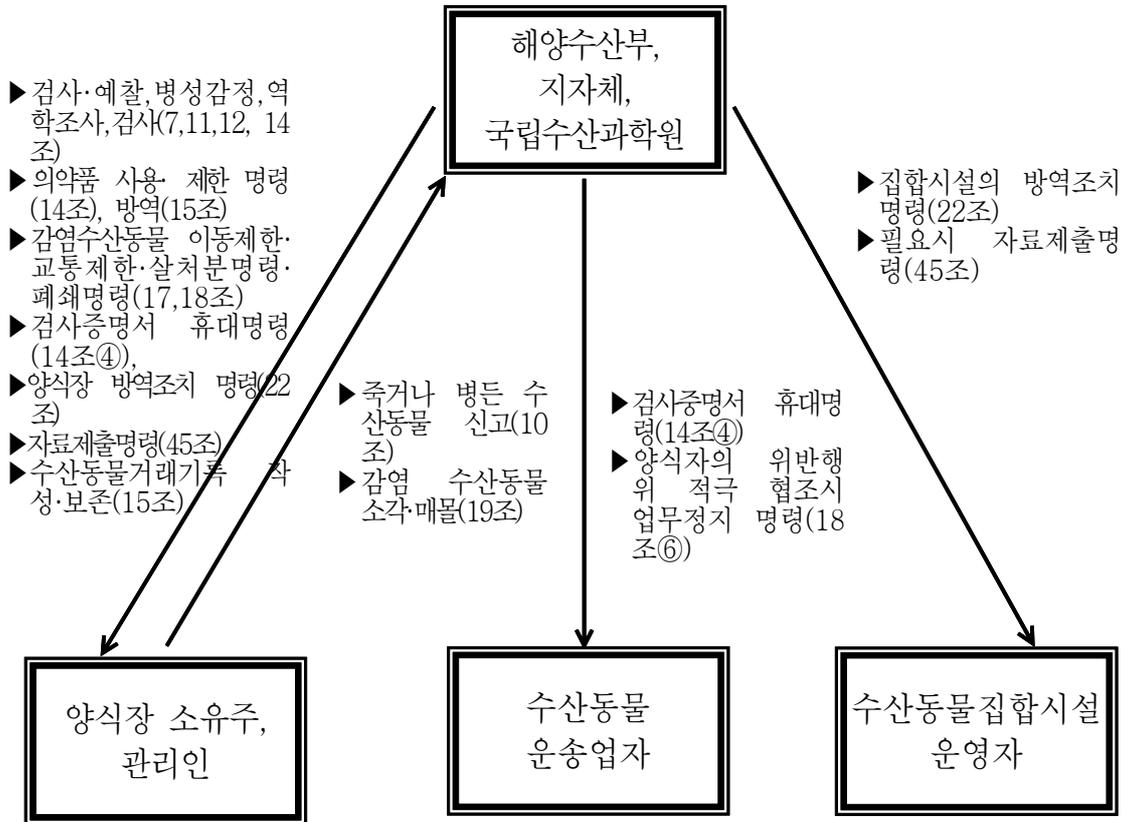
※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서식(예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기재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등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 상하수도 정책관 ○○○, 물산업육성과장 ○○○ ○ 환경경제학회 △△△ 교수(규제영향분석 용역수행)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소속업체수		서면		시공자격범위 확대				
		한국토지공사	예산,사업규모 등		서면		사업확대				
		산업단지공단	예산,사업규모 등		서면		설치비지원 등				
	이해관계자	피규제자 총수/피규제기업수	총 000개 기업		-		-				
	이해관계자	환경관련단체	단체수, 인원수		공청회		사업확대 등				
	관련부처	국토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지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 관련 이해관계인 현황 등 상술(규모별, 자본금 기준, 매출액 기준 등 통계자료 보완)											
5. 규제존속기한	○ 사업의 효과에 따라 제도의 확대시행 또는 개선을 위해 5년의 존속기한 설정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하수도법 제26조)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신축시 중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화 ○ 강화규제 -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사업 시행시 중수도 의무 추가 및 설계·시공자의 자격(개정안 제12조) - 분기검사결과 미통보, 설치 신고 미이행 및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제정안 제 25조) * 하수도법 제26조의 규정은 폐지 예정										
7. 규제체계도	○ 양식에 넣기 힘든 경우는 별지로 가능										

[별지 : 규제체계도(예시)]

< 규제사무명 : 수산동물의 방역 >



- < 기타 규제사무 >
- ▶ 감염수산동물 사체의 재활용(19조)
 - ▶ 감염 물건 소유자는 소각·매몰·소독 의무(20조)
 - ▶ 감염 수산동물 매몰토지는 2년간 발굴 금지(21조)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자유로운 형식으로 상술)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
-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
-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
-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
-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
-

3-2. 이해관계자 협의

-
-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

-

▣ 평가요소별 작성요령

- 조정된 평가요소에 따라 작성방법과 작성사례를 제시하였음
- 작성사례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거 신설·강화한 규제의 자료 등을 토대로 재구성·가상 작성한 것이니 작성예시로만 참조하시기 바람

▣ 평가요소별 작성요령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분석목적>

- 행정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설정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필요한 지’를 짚어보고, ‘꼭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지’에 대해 먼저 검토하여, 불필요한 정부의 개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함
- 이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분석하기 위해 먼저 문제가 된 상황이 어떠한 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작성방법>

-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로 대처하려는 문제가 대두된 배경이나 경위(예: 사고나 재난의 발생 등)를 기술
-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직접 및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
- 문제의 심각성(성격과 크기 등을 포함) 또는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

<작성연습1>

- ◆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 증진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한다면
- 문제와 문제의 원인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이므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또는 인과관계, 우리국민의 흡연실태 등을 기술

- 우리나라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OECD국가 중 1위이며, 연간 4만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

※ 성인남성 흡연율(OECD 2004년 기준)

한국 52.3% 미국 19% 영국 26% 일본 47% 호주 19%

- 특히 2019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이상이 되는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어 ‘인구고령화’의 부담과 ‘흡연의 폐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벅찬 “복합위기”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 담배가격 국제비교시 절대가격아 아닌, 구매력지수 기준(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높은 흡연율의 주요인이 되고 있음 (World Bank 2003)

- 한국 : 1.00 미국 : 1.52 영국 : 3.50 프랑스 : 1.53
호주 : 1.68 방글라데시 : 6.66 독일 : 1.52 베트남 : 3.74

-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북미(미국, 캐나다)에서는 물가인상율을 상회하는 수준의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 중이나, 우리나라는 지난 27년간 평균담배가격 인상률(6.8%)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7.7%)보다 낮은 수준

※ 각 국의 담배가격 인상율과 물가인상율

영국 : 57% vs. 9.7% ('87~'93), 프랑스 : 57% vs. 31.4% ('87~'93)

<작성연습 2>

- ◆ 부주의한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관 파손 및 누출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규제를 설정하는 경우
- 문제는 부주의한 굴착공사로 인해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관의 파손과 누출에 따른 사고이므로, 최근 도시가스관 파손 및 누출사고 현황, 사고발생 시 대형피해 발생 가능성, 사고원인별 분석 등을 기술

○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관의 파손 및 누출시 대규모 인명피해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이의 예방책 마련 필요

- 각종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는 '95년 대구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됨

*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사고('95.4)

· 인명피해 : 사망 101명, 부상 201명

· 재산피해 : 가옥 195채 파손, 차량 152대 파손, 지하철 복강판 400m붕괴

· 사고내용 : 굴착작업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100A,중압)을 90mm정도를 파손시켜, 누출된 가스가 600mm 오수관을 통해 지하철공사장으로 유입·체류 중 폭발

○ 도시가스 관련 사고원인중 각종 굴착·타공사로 인한 것이 34%로 가장 높은 실정

* 도시가스사고 원인별 발생현황(2001~2005, 단위 : 건)

구 분	취급부주의	굴착공사	시설미비	제품불량	기타
건수 (%)	20 (20.6%)	33 (34%)	26 (26.8%)	12 (12.4%)	6 (6.2%)

- 도시의 집중화에 따른 지하매설물의 증가와 이들 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교체·보수 등의 굴착공사 수요는 지속되어 이로 인한 도시가스관 파손 위험은 상존

* 지하매설물(km) : 도시가스배관 24,000, 전력선 61,000, 상수도 122,000 등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분석목적>

- 행정규제는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 또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정책목적과 목표를 확인하고, 이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꼭 개입하여야 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또는 과도한 규제를 예방하자는 것임.

<작성방법>

- 규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태, 정책목표를 장·단기로 나누어 제시
 - 목표기간을 제시하고 그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기술
 - 규제를 통한 궁극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꼭 개입해야만 할 이유 또는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시장실패) 등을 기술
 - 일반적으로 시장실패 요인이 존재할 때 규제의 신설·강화가 정당화 되므로, 우선 시장기능 또는 민간의 자율에 맡겨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기술
 - 기존의 규제나 정부개입이 문제해결에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기술
 - 아래와 같은 비규제대안으로 문제해결이 부적절 또는 불충분한 이유 기술
 - * 비규제 대안 : 보조금 지원, 경제적 유인(관련 세금 감면 혜택, 저리융자 등), 사회운동(각종 캠페인, 공익광고 등)의 전개 등
- 필요시 국내외의 유사사례 및 제도를 원용하여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정당성을 설명

<작성연습1>

- ◆ 금연 유도 및 흡연 억제를 위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를 넣도록 하는 규제를 설정하려는 경우
- OECD 국가중에서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의 장기적·단기적 목표치를 설정하여 기술
- 흡연 억제와 관련한 기존규제를 확인하고, 기존규제 외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외국의 담배관련 규제사례를 검토하여 기술한다.

○ 국민건강증진계획에 따라 성인남성 흡연율을 '02년 60%수준에서 2005년까지 50%, 2010년까지 30%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국민건강증진계획(2002~2010) 중 금연정책 관련 목표

구분	2002	2005	2010
성인남자	61.8%	50%	30%
성인여자	5.4%	3%	2.5%

-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는 담배와 관련된 가격정책 또는 비가격정책 등 다양한 금연정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
 - 담배가격 500원 인상('04.12),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04.7), 금연구역 확대('06.4) 등 관련규제를 마련 시행
 - 직접적인 규제정책 외에도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 캠페인, 금연 광고 방송 실시, 보건소 등을 통한 무료 금연 상담 및 니코틴 패치 제공 등 비규제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 성인남성 흡연율 저하폭이 최근 둔화되고 여성 흡연율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담배갑에 표시토록 되어 있는 경고문구에 발암성 물질 표시의무를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흡연율 변화추이 >

구분	'03	'05	'06	'07
성인남성흡연율	56.7	52.3	44.1 (-8.2%p)	42 (-2.1%p)
성인여성흡연율	3.5	5.8	2.3 (-3.5%p)	4.6 (+2.3%p)
남자고교생흡연율	22.1	15.7	20.7 (+5.0%p)	16.2 (-4.5%p)
여자고교생흡연율	6.8	6.5	5.2 (-1.3%p)	5.2 (0.0%p)

단위 %, ()은 전년대비 증감

- 동규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에서도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등 유사한 규제를 실시 중에 있음.
 - 그러나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 및 절주, 구강보건 등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관련 경고문구를 표기하게 하는 등 정책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음. 다만 중복규제의 문제 해소를 위해 소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하여 시행중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05.5, 비준)에서는 담배가격 인상, 담배광고의 포괄적 금지, 담배경고 강화(담배갑 양면, 담배갑 크기의 50%이상 권장)와 같이 각종 금연정책을 각국 정부가 추진할 것을 요구
 - 캐나다, 호주, EU, 브라질 등은 경고문구와 함께 그림경고를 담배갑에 표기토록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흡연억제 노력 강화 추세

<작성연습2>

- ◆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저하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 경유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능한 정책대안, 수단을 상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함.
 - 해외의 경유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사례를 참조한다.

○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저하를 위한 대책 추진 필요

- 수도권의 경우 PM₁₀의 약 58%가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발생
 - 대기오염의 주발생원인 노후화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 폐차,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
 - *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등을 명령 또는 권고하는 규제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저공해 자동차 전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비규제대책도 추진 중
- <'06년 수도권외 5대 광역시에 지원사업 시범 실시>

대상차량	지원실적
1594대 (관공서 및 비영리법인 소유, 10대 이상 경유차 소유 사업자)	41억원 (DPF 및 DOC 1133대, 저공해엔진 461대)

- 신규 제작 경유자동차의 배출오염물질 통제를 위해 '04년 「유로 III」수준, '06년 「유로 IV」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시행 중

○ 경유자동차 제작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주요 수출대상지역인 EU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배출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EU의 배출허용기준 등을 참조하여 「유로 V」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할 필요

- 단, 배출허용기준 조정에 따른 제작차 업계의 준비를 위해 시행시기는 '09년 9월로 규정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분석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대안을 상정해보고 그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 복수의 대안들중에서 최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것,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에 따른 실질적 부담 차이를 고려’하는 것,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는 것 등을 대안간 비교·선택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복수의 대안을 스스로 상정하고, 각 비교기준에 따라 대안들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분석목적임.

<작성방법>

- 규제목표 달성을 위해 상정할 수 있는 복수의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
- 상정된 대안을 아래의 기준에 따라 비교
 - **규제방식**
 -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의 확대를 위해 명령지시적 규제보다는 시장유인적 규제 우선
 - * 포지티브(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방식보다는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우선
 - * 투입기준 규제보다는 성과기준 규제 우선
 - * 정부의 일방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의 여지 검토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 * 규제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진입제한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독과점구조의 고착화 가능성,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 등이 없거나 낮은 규제대안 우선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 * 중소기업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비용을 유발하지 않는 규제 우선
 - * 이런 목적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집행시기, 집행방법 등의 차별)이 가능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인지 검토
 -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
 - * 부당한 무역거래 제한 가능성, 국내외 기업의 차별대우, 외국인투자 등에 미치는 왜곡효과가 적은 규제대안 우선
 - **다양한 의무이행방법에 대한 검토를 기술**
 - * 의무이행 방법의 선택여지 부여, 민원처리기한 경과시 의제 처리 등

<작성연습 1>

◆ 고리대금,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채업의 양성화와 제도권내 편입을 유도하고 ‘대부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요건 등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지,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등 규제의 유형은 어떤 것이 적절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복수의 대안을 상정하고 면밀히 장·단점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 ‘대부업종’ 신설시 관리방식 비교·검토

- ‘대부업 제도’ 도기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특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한 후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의 불법 대금업자를 양성화하고 제도권 편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구분	장·단점 등
1안 허가제	특정 요건에 적합한 자를 허가·관리함으로써 대부업자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여 ‘불법 채권추심 및 고이자’ 등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강하게 보호 가능
2안 등록제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시·도에 등록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 등록 갱신제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양성화 촉진 및 관리 용이
3안 신고제	신고만으로 대부업 영업을 가능케 하여, 사채업자를 대부업에 끌어 들여 양성화 하는 데 가장 효과가 있을 것이나, 사후 관리의 어려움과 무자격 대부업자 난립 우려

- 아울러 등록기준 및 요건 규정방식도 네거티브 방식을 채용하여 제도권으로 사채업자의 편입을 촉진할 필요
 - 등록 제한사유로 ▲미성년자·금고이상 실형 수형자 등 기본적인 제한사유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형법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을 위반한 자 등을 특별히 제한사유로 규정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규제를 통한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
- 특정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부업 등록 및 영위가 가능하므로 진입장벽 등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없음
- 기타 대부업 제도는 중소기업 부담 가중, 국제경쟁 저해 여부 등과는 관계없음

<작성연습2>

- ◆ 관세청이 보세 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시내 면세점의 신규 특허 및 갱신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 시내 면세점을 ‘특허’제도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신규 특허요건 강화로 시장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기술한다

- 시내 면세점 특허제도는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시장경쟁제한의 성격이 있으나
 - 면세점은 입출국 공항, 항구 등에서 운용하고 시내 면세점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 편의 도모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특허’ 제도를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음
 - * 세계관세기구(WCO)에서는 면세점은 공·항만을 제외한 곳에 설치한 것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태국, 대만, 하와이, 광, 싱가포르 정도임.
 - * 우리나라는 ‘79년 처음 2개소의 시내 면세점을 도입한 이래,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앞두고 시내 면세점이 24개소로 급증
- 신규 특허 허용관련 검토
 - 관련대안

구분	장점	단점
1안 신규특허 불허	○예외적으로 시내 면세점을 허용하는 취지와 부합	○기존업자에의 특혜시비, 신규업자 진입 장벽
2안 시내면세점 전면허용	○시장경쟁을 통해 시장 효율성 확보	○시내면세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근간에 영향
3안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요건 충족시 특허)	○시내면세점 난립 방지 가능	○요건설정시 특혜시비 가능성 잔존

 - ⇒ 진입장벽의 제거를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2안이 적합하나, ‘79년 도입 이래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3안이 현실적 측면 및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함.

아울러 신규 특허 기본요건은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여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해 진입장벽 등 시장경쟁 제한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기타 규제방식, 중소기업 영향분석 등은 동 규제와 관계가 없어 기술 생략

<작성연습3>

- ◆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그간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우
 - 의무 적용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규모별 현황을 파악하고, HACCP을 준수하기 위한 추가비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업규모에 따라 시행시기 등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6개 식품류(어육·어류 등 냉동수산식품·피자 등 냉동식품·빙과류·비가열음료·레토르트 식품)에 대해 HACCP을 의무 적용할 경우 적용 대상업체 수는 총 760개이며, 식품제조업체의 특성상 대기업, 중소기업 등 다양한 규모의 업체가 규제의 대상

< 식품별 업체현황 >

구분	어육류	냉동 수산식품	냉동 식품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계
업소(개)	149	172	288	57	36	58	760 개
비율(%)	19.61	22.63	37.89	7.5	4.74	7.63	100 %

< 식품제조업체 매출액 규모별 현황 >

(단위: 개소, %, 천원)

구분	업체수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총계	13,083	100.00	20,816,714,111	100.00
1억원 미만	8,109	61.98	208,397,436	1.00
1~5억원	2,749	21.01	637,033,967	3.06
5~10억원	791	6.05	561,272,009	2.70
10~20억원	575	4.39	817,372,225	3.93
20~50억원	440	3.36	1,375,351,432	6.61
50~100억원	193	1.48	1,309,401,178	6.29
100~300억원	135	1.03	2,371,350,736	11.39
300~500억원	29	0.22	1,150,064,460	5.52
500~1000억원	21	0.16	1,528,420,236	7.34
1000~2000억원	23	0.18	3,208,766,881	15.41
2000~5000억원	12	0.09	3,234,458,083	15.54
5000~1조원	5	0.04	3,397,433,843	16.32
1조원 이상	1	0.01	1,017,391,625	4.89

- HACCP 의무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2천만원~최대 2억원 정도의 설비 개 보수 비용이 소요되어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동 규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기업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HACCP 의무적용시기를 차등화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소규모업체가 HACCP의무적용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적절

< 단계별 업종별 적용업체 현황 >

구분	계	어묵류	냉동 수산 식품	냉동 식품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비고 (매출액 및 종업원 수 최대·최소치)
1단계 : '06.9 시행 연매출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76	12	14	17	18	9	6	<최대> 2,283억 원, 806명
2단계 : '08. 9 5억이상 21인이상	95	17	31	22	13	5	7	
3단계 : '10. 9 1억이상 6인이상	218	42	72	59	14	11	20	<최소> 1백만원 , 1명
4단계 : '12. 9 1억미만 5인미만	371	78	55	190	12	11	25	

○ HACCP제도는 '96년부터 비강제 임의제도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어 온 바, 급작스런 규제 도입·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의무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네거티브 방식을 채용

○ 기타 경쟁제한 또는 무역거래 제한 등의 우려는 없음

대안 탐색시 고려할 사항

< 정부개입 정도가 적은 대안을 선택 >

- 규제를 불가피하게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 **정부개입의 정도 또는 규제의 강도가 가급적 낮은 것을 선택**하여 국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예컨대, 특허, 허가, 등록, 신고 등의 규제 유형 중 행정기관의 재량을 가급적 축소하는 유형을 선택
 - * 농어촌 민박사업제도를 등록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
 - 일정한 요건,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기준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상정해 보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검토·선택
 -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3ppm, 5ppm, 7ppm 등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하는 지

대안 탐색시 고려할 사항

< 경쟁제한·자유무역 저해 여부 >

- 시장의 자원 최적배분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함.
 -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할 때 의도하건 또는 의도하지 않건 경쟁을 촉진 또는 저해할 수가 있음. 따라서 신설 또는 강화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파악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는 최대한 제거 또는 개선하여 시장기능의 효율적 작동을 도모할 필요
 - * 신규업체의 참여를 막는 진입장벽의 효과가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특정자격·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기업이 불합리하게 혜택 또는 차별을 받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등
-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및 기업활동 보장은 해외기업·무역거래 등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함
 - * 국내·외 기업 또는 개인을 차별하는 경우,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세우는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등

대안 탐색시 고려할 사항

<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에 따른 유연한 규제적용의 가능성 >

- 동일한 행정규제라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인 준수비용, 부담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의 유연한 적용 등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규제대상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를 해보고, 규제를 적용 집행시 기업의 규모에 따른 상대적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예를 들어, 특정한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토록 하는 경우 설치비용이 대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나, 동종업종의 소규모기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 이러한 경우, 규제대상 기업들을 규모에 따라 수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기업은 규제 적용을 면제하여 주거나,
 -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내용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한다든지,
 -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의 적용시기를 다르게 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규제를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적용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규제 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1981년에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해서는 법령 제·개정시 규제 유연성 분석(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대안 탐색시 고려할 사항
<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극 고려 >

□ 기업 또는 국민의 활동·행위를 제한함에 있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 채택을 적극 고려

- 네거티브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보다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보장

◆ 사업·경제활동 영역 중 제한되는 영역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한 유형

○ 학교기업이 영위할 수 없는 사업종목만을 특정한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제36조 (학교기업)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①**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종목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 담배소매업, 일반유희주점업 등을 별표에 규정)

◆ 금지대상 행위 또는 대상물을 특정하는 유형

○ 유통제한 가능 임산물의 종류를 특정한 경우

●**산림자원조성법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수급 조절, 유통 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유통**이나 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한 사유와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7조 (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유통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이버섯

2. 솔잎

○ 전략물자 수출제한 대상 품목을 특정한 사례

●**대외무역법 제19조 (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에서 제한물품 등을 열거

대안 탐색시 고려할 사항
< 규제에 따른 의무이행방법을 다양화 >

□ 일률적 기준 설정 및 집행 등으로 인해 행정일선의 현실을 반영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고, 기업과 국민의 자율성 존중 등을 위해 의무 이행방법을 다양하게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사업체에게만 직접 행정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처리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체시설의 설치시 관련 행정규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 제조업자가 제품·포장재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직접 이행하거나, 위탁처리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토록 한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하 생략)

◆ 도시재정비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시, 용적율·건축물 높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舊)「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①,②생략

③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대안 탐색시 고려할 사항
< 규제의 효력 발생방법을 다양화 >

- 신고, 등록, 인·허가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행정행위 예측 가능성 제고
- 처리기한이 경과해도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는 경우, 관련 행정행위의 효과가 자동발생토록 하여 처리기한 지연을 원천적으로 예방

●공장설립 승인 관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13조④)
공장설립 승인권자(시·군·구청장)는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설립 승인과 관련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지연사유를 30일 이내 통보해야 하며, 기한 경과시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

●면세물품 폐기승인 신청관련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4조)
조건부 면세물품 반입 후 부패·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폐기승인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

●조세의 연부연납 신청·허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7조)
세무서장이 일정기간*이내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
*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 부터 상속세는 6월, 증여세는 3월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분석목적>

- 어떤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경제·사회적인 비용과 편익을 예측해 봄으로써, 이를 통한 규제의 신설·강화가 필요 또는 불가피한지를 판단하고, 여러 대안들 중에서 최적, 실현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 비교·선택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최적의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것

<작성방법>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먼저 신설·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피규제자 그룹이 누구인지를 판명하고,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피규제자 그룹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될 지 추정한다.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비용추정시와 같이 규제로 인해 수혜를 보는 그룹을 식별하고, 어떠한 편익이 발생하는지와 이러한 편익을 측정하는 지표 또는 방법을 결정하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발생할 편익을 추정

3) 대안간의 비용/편익 비교, 대안 선택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도 여러가지의 대안을 상정하고, 각 대안별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한 후 그 결과를 대안간에 비교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

1)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분석목적>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후생수준의 감소를 가치화하여, 사회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의 크기를 측정하여 규제의 효과를 평가

<분석절차>

단계 1: 비용항목의 식별

예상되는 후생감소를 직접비용(명시적 비용)과 간접비용(암묵적 비용)으로 구분하여 열거

단계 2: 비용부담자의 식별

어떤 그룹이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지 결정

단계 3: 비용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

비용측정을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값을 계산할 방법을 결정

단계 4: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규제안이 실행되었을 경우 각 지표 값을 측정하고 이 값의 변화를 추정

단계 5: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각 지표가 공통의 화폐단위로 환원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화폐단위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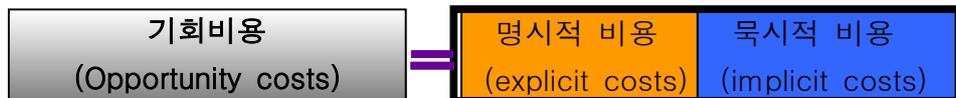
단계 6: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규제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비해 규제를 실행할 경우 각 대안 별로 누가, 언제, 무엇을 잃게 되는지 설명

■ 단계 1: 비용항목의 식별

○ 비용 유형

- 규제가 발생시키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파악
- 기회비용은 어떤 자원이나 서비스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인해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



○ 기회비용은 명시적(explicit) 비용과 암묵적(implicit) 비용을 합한 비용

- 명시적 비용(직접적 비용)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고, 암묵적 비용(간접적 비용)은 직접적인 화폐지출을 동반하지 않는 비용을 의미
-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직접비용의 범주 : 직업훈련비, 인건비, 장비구입, 전문가 자문비, 작업방식의 전환, 투입물 또는 생산물 대체 비용 등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직접비용과 정부의 규제 집행, 감독비용, 정책개발 등과 규제에 의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직접비용 등
- 규제에 의한 간접비용의 범주 : 창업수의 감소, 생산성 하락, 고용감소, 소비자 선택폭 감소, 경쟁의 감소, 혁신능력의 감소 등

■ 단계 2: 비용부담자의 식별

○ 각 규제안별로 영향을 미칠 그룹을 식별

- 민간사업 - 특정 산업, 기업 형태와 다양한 규모의 사업
- 소비자 - 더욱 일반적으로 시민
- 공공부문 - 정부부처, 실행과 집행을 맡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 민간사업에 발생하는 비용검토

- 규제가 민간사업부문에 발생시키는 비용은 피규제 대상의 규모가 크고 범위가 넓을수록 기업의 회계적 비용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 즉 기회비용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
- 구체적으로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지,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는지, 또는 소비자가 원하는 생산물의 공급을 어렵게 하는지 등

○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비용검토

- 규제가 소비재의 가격, 품질, 공급 등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킴. 이런 변화에 소비자가 어떻게 반응(예: 구매행위의 변화)할 것인지 검토 필요
- 규제로 인한 생산가격 상승의 경우 가격증가분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가격상승이 얼마 되지 않으면 무시해도 무방. 그러나 상당한 가격상승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에 불리한 재분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은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추정
 - 재화시장의 경쟁정도(완전경쟁↔독점)
 - 수요의 탄력성(해당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 대체재나 보완재의 존재 여부와 이들 재화의 가격과 판매량 검토)

○ 정부에게 발생하는 비용검토

- 일반적으로 규제는 정부에게 규제를 집행, 관리하기 위한 비용을 발생시킴 :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집행비용(enforcement costs),
- 행정비용: 규제안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로 주로 행정처리 시간과 업무량으로 비용 추정
- 집행비용: 강제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기위한 모든 활동, 조사, 검사 등의 비용

■ 단계 3: 비용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

○ 대표적인 직접비용의 측정지표 :

- 직업훈련, 새로운 작업방식 등 순응위한 노동비용 = 시간급×(조정계수)×이런 활동에 투입된 시간×피규제 기업 수
- 새로운 장비나 생산과정의 비용은 당사자와 면담, 설문 통해 데이터 생성
- 정보수집과 순응입증비용 = 노동비용 + 새로운 장비(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사용비
- 면허취득비용 = 요금 + 행정/노동비용
- 각종 법률, 회계 등의 자문비용

■ 단계 4: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 규제실행시 발생할 결과는 결국 규제하에서의 이 지표들의 미래 값과 비교기준 상황에서의 지표 값과의 차이를 의미.
 -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합리적 기간을 설정하여 지표 값의 매년 예측치를 계산. 그러나 비용과 편익의 발생시점이 다를 경우 비용과 편익을 서로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
- 불확실성 고려
 - 불확실성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
 -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는 규제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인 기준의 설정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이 필요

- ① 비용과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여야 한다.
- ② 비용과 편익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에 대한 확률과 그 범위에 대해 대략적인 수치적 판단을 도출해야 한다.
- ③ 필요한 경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④ 시나리오나 민감도 분석보다 더 정밀한 다른 방법들이 유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 * 민감도 분석은 불확실한 요인에 의해 비용·편익의 추정이 달라질 경우, 그 요인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분석하는 것

< 불확실성 분석사례 : 농림수산식품부 「살처분 명령 및 제2종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

-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 및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 및 구제역이 의심되는 일정지역안의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구제역에 의한 규제비용은 살처분 보상금, 매몰지 정비 및 환경영향조사비용,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보급비용, 가축방역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나, 구제역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역 발생이라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규제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가정을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분석 실시

□ 규제의 비용분석 절차

- 규제내용 및 법적근거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1종 및 제2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소유자 및 구제역 등의 경우는 일정지역안의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을 명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 살처분 명령에 따른 규제비용
 - 구제역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발생 시 규제 비용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구제역에 의한 규제비용은 살처분 보상금, 매몰지 정비 및 환경영향조사비용, 구제역 발생지 상수도 보급비용, 가축방역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
 - 이러한 비용은 구제역에 감염된 소와 돼지의 수에 따라 변화하며, 비용 산정시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본 사례에서는 소와 돼지의 살처분보상금만을 규제비용으로 산정하였음 (구제역은 제1종가축전염병 중 하나로써 살처분 명령 대상임)
 - 따라서 기존 구제역 발생 년도 및 살처분된 소와 돼지의 수를 참고하여 간접적으로 규제비용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함

<표> 구제역 발생 년도 및 살처분대상 (단위 : 두)

	2000	2002	2010.1	2010.4	2010.11~ 2011
발생기간	3.24~4.15 (22일간)	5.2~6.23 (52일간)	1.2~1.29 (28일간)	4.8~5.6 (29일간)	(2.24일 기준)
살처분대상	소: 2,216	소: 1,372 돼지: 138,708	소: 2,905 돼지: 2,953	소: 10,848 돼지: 38,307	돼지: 3,300,000 소: 150,000

(출처:농림수산식품부)

- 살처분보상금은 전국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2011년 4월 평균 소: 4,527,000원, 돼지: 438,000원)

<표> 축산물 가격동향 (2011년 5월 23일 기준)

품 목		2011년 4월 평균
한우 전국경매가격	농가수취가격 (600kg 기준)	4,527,000원
돼지 전국경매가격	비육돈 (110kg 기준)	438,000원

(출처:축산물등급판정소)

- 규제비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발생빈도 및 규모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가정했을 때, 규제비용의 추정값은 최소 약110억원(2000년 기준), 최대 2조2,120억원(2011년 기준)
- 또한 살처분 명령에 따른 규제비용은 '시나리오2'와 같이 평균적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약 2,000억원 발생
- 살처분 명령에 따른 규제비용은 추정방법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함

규제비용 계산

시나리오 1.

◇ 최소비용

=> 2000년 살처분 소 2,216 마리 X 4,527,000 원 = 10,031,832,000 원

◇ 최대비용

a : 2011년 살처분 소 150,000 마리
b : 2011년 살처분 돼지 3,300,000 마리

=> (a X 4,527,000 원) + (b X 438,000 원) = 2,124,450,000,000 원

※ 소: 4,527,000 원, 돼지: 438,000 원(전국경매가격 기준)

시나리오 2.

◇ 평균비용 = (최소비용 + 최대비용) / 11년

=> (10,031,832,000 원 + 2,124,450,000,000 원) / 11 = 194,043,802,909 원

※ 11년은 구제역 최초 발생 년도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실제 비용 산 시 구제역발생지 상수도 보급비용, 매몰지 정비 및 환경영향조사비용, 가축방역비용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하나, 본 사례에서는 살처분보상금만을 비용으로 산정

■ 단계 5: 화폐단위로 전환

- 원칙적으로 측정된 모든 비용(편익)은 화폐단위로 환원
 - 이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치측정기법을 활용
- 특히, 비용(편익)이 다년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편익)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화폐의 시간가치(할인율)를 고려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합하여 총비용(총편익)의 현재가치와 비교
- 규제영향분석 비용·편익 분석시 할인율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할인율 또는 부처가 판단한 적정 할인율을 적용

※ 실질 사회적 할인율 변화(KDI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참조)

- 1999-2003 (일반지침 제3판) : 7.5%
(수자원부문은 6.0%의 할인율 적용)
- 2004-2008 (일반지침 제4판) : 6.5%
(수자원부문은 30년 동안은 6.5%, 이후 20년은 5.0%의 할인율 적용)
- 2009년 이후 (일반지침 제5판): 5.5%
(수자원부문은 30년 동안은 5.5%, 이후 20년은 4.5%의 할인율 적용)

□ 할인율의 개념

- 할인율(discount rate)이란 미래의 비용이나 편익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만들어 주기 위해 사용되는 비율을 말함

$$PV(Bn) = \frac{Bn}{(1+r)^n} (r: \text{할인율}, B: \text{편익})$$

- r은 할인율이고, 규제가 발효된 n년 후에 발생하는 편익을 Bn이라 하면, Bn의 규제시행 시점으로 현재화한 가치는 PV(Bn)으로 표시할 수 있음

□ 할인의 절차

- 편익의 현재가치는 할인계수(discount factor)를 먼저 구하고 이를 발생하는 편익액에 곱하여 줌으로써 계산됨

$$\text{할인계수} = \frac{1}{(1+r)^t} (r: \text{할인율}, t: \text{해당연도})$$

< 할인율 적용 사례 1 >

○ 폐기물매립시설의 종료검사 및 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른 규제영향의 시간적 범위를 향후 20년 이후로 가정할 경우 총비용의 현재가치는 249,228 백만원으로 추산

- 할인율 5.5% 적용

< 매립시설종료검사 및 사후관리정기검사 의무화에 따른 총 비용 (단위: 천원) >

연도	총검사비용		규제비용	현재가치	현재가치 산정식
	검사비용	검사횟수			
2011	20,855,204	1	20,855,204	19,767,966	$= 20,855,204 \times \frac{1}{(1+0.055)^1}$
2012	20,855,204	1	20,855,204	18,737,408	$= 20,855,204 \times \frac{1}{(1+0.055)^2}$
2013	20,855,204	1	20,855,204	17,760,577	$= 20,855,204 \times \frac{1}{(1+0.055)^3}$
2014	20,855,204	1	20,855,204	16,834,670	$= 20,855,204 \times \frac{1}{(1+0.055)^4}$
2015	20,855,204	1	20,855,204	15,957,033	$= 20,855,204 \times \frac{1}{(1+0.055)^5}$
2016	20,855,204	1	20,855,204	15,125,150	$= 20,855,204 \times \frac{1}{(1+0.055)^6}$
2017	20,855,204	1	20,855,204	14,336,635	$= 20,855,204 \times \frac{1}{(1+0.055)^7}$
2018	20,855,204	1	20,855,204	13,589,227	$= 20,855,204 \times \frac{1}{(1+0.055)^8}$
2019	20,855,204	1	20,855,204	12,880,784	$= 20,855,204 \times \frac{1}{(1+0.055)^9}$
2020	20,855,204	1	20,855,204	12,209,274	$= 20,855,204 \times \frac{1}{(1+0.055)^{10}}$
2021	20,855,204	1	20,855,204	11,572,727	$= 20,855,204 \times \frac{1}{(1+0.055)^{11}}$
2022	20,855,204	1	20,855,204	10,969,452	$= 20,855,204 \times \frac{1}{(1+0.055)^{12}}$
2023	20,855,204	1	20,855,204	10,397,585	$= 20,855,204 \times \frac{1}{(1+0.055)^{13}}$
2024	20,855,204	1	20,855,204	9,855,531	$= 20,855,204 \times \frac{1}{(1+0.055)^{14}}$
2025	20,855,204	1	20,855,204	9,341,735	$= 20,855,204 \times \frac{1}{(1+0.055)^{15}}$
2026	20,855,204	1	20,855,204	8,854,725	$= 20,855,204 \times \frac{1}{(1+0.055)^{16}}$
2027	20,855,204	1	20,855,204	8,393,104	$= 20,855,204 \times \frac{1}{(1+0.055)^{17}}$
2028	20,855,204	1	20,855,204	7,955,549	$= 20,855,204 \times \frac{1}{(1+0.055)^{18}}$
2029	20,855,204	1	20,855,204	7,540,805	$= 20,855,204 \times \frac{1}{(1+0.055)^{19}}$
2030	20,855,204	1	20,855,204	7,147,682	$= 20,855,204 \times \frac{1}{(1+0.055)^{20}}$
총액	417,104,080	20	417,104,080	249,227,665	

※ 2011년부터 검사의무화

< 할인율 적용 사례 2 >

○ 일당을 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10년간 총 비용은 현재가치로 4,174 천원 소요

<일당 5만원, 할인율 5.5% 가정했을 때 총 비용>

연도	신청서 작성 비용			규제비용 (천원)	현재가치 (천원)	현재가치 산정식
	소요인원 (명)	소요시간 (일)	일당 (천원)			
2011	1	1	50.0	450.0	426.5	$= 450.0 \times \frac{1}{(1+0.055)^1}$
2012	1	1	52.5	472.5	424.5	$= 472.5 \times \frac{1}{(1+0.055)^2}$
2013	1	1	55.1	496.1	422.4	$= 496.1 \times \frac{1}{(1+0.055)^3}$
2014	1	1	57.9	520.9	420.4	$= 520.9 \times \frac{1}{(1+0.055)^4}$
2015	1	1	60.8	547.0	418.5	$= 547.0 \times \frac{1}{(1+0.055)^5}$
2016	1	1	63.8	574.3	416.2	$= 574.3 \times \frac{1}{(1+0.055)^6}$
2017	1	1	67.0	603.0	414.5	$= 603.0 \times \frac{1}{(1+0.055)^7}$
2018	1	1	70.4	633.2	412.5	$= 633.2 \times \frac{1}{(1+0.055)^8}$
2019	1	1	73.9	664.9	410.6	$= 664.9 \times \frac{1}{(1+0.055)^9}$
2020	1	1	77.6	698.1	408.6	$= 698.1 \times \frac{1}{(1+0.055)^{10}}$
총액					4,174.7	

※ 할인율 5.5% 적용

※임금상승률 5% 일당에 반영

■ 단계 6: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위의 5단계를 거쳐 화폐단위로 측정된 비용에서 무규제 상황에서 측정된 비용의 가치를 제외하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가치를 계산

<작성연습 1>

- ◆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 범위를 옥외계단용, 옥외바닥재용 또는 노반보강용 등에서 철도시설 노반보강용 및 선박제조시설 받침용으로만 한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 규제강화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룹은 폐침목 처리업체 및 판매업자, 공원 및 조경시설업자 등이며, 철도 폐침목의 재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인해 어떤 대체재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와 대체재 사용량 추정을 위한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는지 등 비용을 결정짓는 주요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 가정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분석 실시

□ 규제의 비용분석

① 단계 1 : 비용항목의 식별

- 폐기물 처리費用
 - 철도 폐침목은 철도시설 노반보강용 및 선박제조시설 받침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나머지 용도로 사용되던 철도폐침목은 폐기처리해야 함. 이 때, 처리되는 비용을 의미
- 대체재 사용費用
 - 철도 폐침목이 활용될 수 있었던 옥외계단 등에서는 다른 대체재를 사용해야 함. 이 때, 그 대체재 사용을 위한 비용을 의미

② 단계 2 : 비용부담자의 식별

- 폐기물 처리費用
 - 철도 폐침목 폐기물처리업체가 부담(그 비용은 철도당국이 최종 부담)
- 대체재 사용費用
 - 옥외계단 등에 철도 폐침목을 사용했던 건설업자(그 비용은 발주자가 최종 부담)

③ 단계 3 : 비용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

- 폐기물 처리비용
 - 폐기물 量 : 전체 철도 폐침목중에서, 철도시설 노반보강용 및 선박제조시설 받침용으로 사용되는 철도 폐침목 수량을 제외한 것임
 - 폐기물 처리單價 : 일반폐기물 1톤당 소각비용으로 추정

- 대체재 사용비용

- 대체재 量 : 동일 재질·강도를 가진 목침목 H3, H4를 대체재로 사용한다고 할 때, 상기 폐기물 수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목침목 H3, H4의 사용량을 추정함. 이 때, 목침목 H3, H4 사용량은 향후 10년간 현행 사용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대체재 單價 : 목침목 H3, H4의 시장 최저가 및 최고가를 활용

④ 단계 4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 ⑤ 단계 5 :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폐기물 처리비용

· 폐기물 量 × 폐기물 처리單價 = 4,183 톤 × 20만원/톤 ≙ 837백만원

- 대체재 사용비용

- H3로 대체할 경우,

대체재 사용량 × 대체재 단가 = 54,196정 × 70,200원(최소가격)/정 or

대체재 사용량 × 대체재 단가 = 54,196정 × 73,200원(최대가격)/정

- H4로 대체할 경우,

대체재 사용량 × 대체재 단가 = 54,196정 × 94,400원(최소가격)/정 or

대체재 사용량 × 대체재 단가 = 54,196정 × 97,400원(최대가격)/정

< [H3대체] 10년간 연평균 사용량 유지시 대체비용의 현재가치 >

(단위:백만)

년도	추정 사용량 (단위:정)	최소비용	최소비용 현재가치	최대비용	최대비용 현재가치
2009	54,196	3,804	3,572	3,967	3,725
2010	54,196	3,804	3,354	3,967	3,497
2011	54,196	3,804	3,150	3,967	3,284
2012	54,196	3,804	2,957	3,967	3,084
2013	54,196	3,804	2,777	3,967	2,896
2014	54,196	3,804	2,607	3,967	2,719
2015	54,196	3,804	2,448	3,967	2,553
2016	54,196	3,804	2,299	3,967	2,397
2017	54,196	3,804	2,159	3,967	2,251
2018	54,196	3,804	2,027	3,967	2,113
현재가치 합계			27,350		28,519

< [H4 대체] 10년간 연평균 사용량유지시 대체비용의 현재가치 >

(단위: 백만)

년도	추정 사용량 (단위:정)	최소 비용	최소 비용 현재가치	최대금액	최대비용 현재가치
2009	54,196	5,116	4,804	5,279	4,957
2010	54,196	5,116	4,511	5,279	4,654
2011	54,196	5,116	4,235	5,279	4,370
2012	54,196	5,116	3,977	5,279	4,103
2013	54,196	5,116	3,734	5,279	3,853
2014	54,196	5,116	3,506	5,279	3,618
2015	54,196	5,116	3,292	5,279	3,397
2016	54,196	5,116	3,091	5,279	3,190
2017	54,196	5,116	2,903	5,279	2,995
2018	54,196	5,116	2,725	5,279	2,812
현재가치의 합계			36,779		37,948

- 현재가치화 : 10년에 걸쳐 비용이 발생하므로 할인율 6.5%로 가정하고 현재가치화

⑥ 단계 6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폐기물 처리비용

· 철도 폐침목 폐기물처리업체(그 비용은 철도당국이 최종 부담)가 연간 837백만원을 부담

- 대체재 사용費用

· 옥외계단 등에 철도 폐침목을 사용했던 건설업자(그 비용은 발주자가 최종 부담)는
연간 평균 2,793백만원 또는 3,736백만원을 부담

☞ 규제도입으로 인해서 부담해야 하는 연간 비용은 3,630백만원 또는 4,573백만원

<작성연습 2>

- ◆ 수입활어 불법반출로 인한 과세누락 및 국민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수입 활어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활어 장치장 설치 및 과태료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의 비용을 추정한다고 하면
 -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그룹은 활어 수입업체 및 활어 장치장 운영인과 감독 당국인 행정관청이 되며, 활어 장치장 설치·운영비용, 장비유지 및 행정감독의 부담을 비용으로 계산

□ 규제의 비용분석

① 단계 1 : 비용항목의 식별

- 활어업체 장치장 설치·관리 및 매출손실 費用

규제분류	비용항목
○ 활어 장치장 설치 및 운영	<장비 및 시설비용> ○ 추가 CCTV 설치 비용 ○ 이동식 CCTV 설치 비용
○ 행정제재	<간접비용> ○ 반입정지 기간 중 매출손실

- 감독당국의 지정장치장 설치·운영 및 집행감독 費用

규제분류	비용항목
○ 활어장치장 설치 및 운영	<감시체계 개발 및 설치비용> ○ 활어감시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
○ 반출입관리	<시설비용> ○ 지정장치장 설치 ○ 지정장치장 운영

② 단계 2 : 비용부담자의 식별

- 활어업체 장치장 설치·관리 및 매출손실 費用
 - 활어 장치장 운영업체 및 활어 수입업체가 부담
- 감독당국 지정장치장 설치·운영 및 집행감독 費用
 - 활어감시프로그램 및 지정장치장 설치·운영 등 감독기관인 행정관청이 부담

③ 단계 3 : 비용 측정지표 및 방법 결정

- 활어 장치장 설치·관리 및 매출손실비용
 - 장비 및 시설 설치비용 : 수조 2개당 CCTV 1대 이상, 이동식 CCTV 1대 이상 설치하고, 평균 판매가격으로 비용 추산
 - 반입정지로 인한 매출손실 : 최근 3년간 평균 반입정지 건수 × 반입정지 기간 × 일평균 매출액으로 매출손실 추정
- 지정장치장 설치·운영 및 반출입 관리비용
 - 프로그램 개발비용 : 감시프로그램 평균 개발비용으로 비용추정
 - 지정장치장 설치·운영비용 : 면적 33 ~ 66㎡의 수조가 최소 30 ~ 50개인 지정장치장을 건립할 것으로 가정한 비용

④ 단계 4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 ⑤ 단계 5 :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활어 장치장 운영업체 및 활어 수입업체의 규제준수비용
 - 1) 장비 및 시설비용
 - 추가 CCTV 설치 비용 : 584(개) × 30(만원) = 약 17,520만원
 - 이동식 CCTV 설치비용 : 103(개) × 30(만원) = 약 3,090만원
 - ※ CCTV 내구연한은 5년
 - 2) 간접비용 : 행정제재로 인해 반입정지 기간 중 매출감소
 - (반입정지 기간 기대치) 2008년도 총 6,935건의 수입건수와 총 US \$ 278,091,000의 수입금액이 하나의 업체에서 발생한 실적으로 가정하고, 이 업체가 1회 수입 시 반입정지 당한다고 가정하면,
 - 최근 3년간 연평균 반입정지 제재 건수 : 14건
 - (매출손실) 반입정지 건수 × 반입정지 기간 × 일평균 매출액
= 14 × 0.253 × 91,427만원 = 323,834만원
 - 따라서, 반입정지로 인한 업체의 매출감소는 323,834만원이나, 규제강화로 업체의 법규준수도가 향상되면 이러한 반입정지 제재 횟수는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감독당국의 집행감독 비용

1) (감시체계 개발 및 설치비용) 활어감시 프로그램 개발·설치비용 2,000만원

2) 시설 및 운용비용

○ (지정장치장 설치비용) 면적 33 ~ 66㎡의 수조가 최소 30 ~ 50개인 장치장 건립

- 최소비용 = 약 6억원

· (부지) 약 100만원(3.3㎡당) x 10 x 수조 30(개) = 약 3억원

· (수조) 약 1,000만원(개당) x 30(개) = 약 3억원

- 최대비용 = 약 25억원

· (부지) 약 200만(3.3㎡당) x 20 x 수조 50(개) = 약 20억원

· (수조) 약 1,000만(개당) x 50(개) = 약 5억원

○ (지정장치장 운영비용) 총 수조의 최소 50% ~ 최대 100% 운영 가정

- 최소비용 = 약 137,250만원

* 30개(수조) x 183(일) x 25만(수조당 1일 평균비용) = ₩ 137,250,000

- 최대비용 = 약 456,250만원

* 50개(수조) x 365(일) x 25만(수조당 1일 평균비용) = ₩ 4,562,500,000

< 향후 10년간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 >

<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 >

<단위 : 만원>

그룹	비용항목	2010	2011	2012	2013	2014
활어 업체	추가 CCTV 설치비용	17,520				
	이동식 CCTV 설치비용	3,090				
	매출손실(매년 25%씩 감소)	323,834	242,876	182,157	136,617	102,463
	매출손실(매년 50%씩 감소)	323,834	161,917	80,959	40,479	20,240
감독 당국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용	2,000				
	지정장치장 비용(최소)		197,250	137,250	137,250	137,250
	지정장치장 비용(최대)		706,250	456,250	456,250	456,250
총비용(최소)		346,444	440,126	319,407	273,867	239,713
현재가치		328,382	395,432	272,011	221,070	183,412
총비용(최대)		346,444	868,167	537,209	496,729	476,490
현재가치		328,382	780,006	457,494	400,967	364,578

구분	비용항목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활어업체	추가 CCTV 설치비용	17,520					35,040
	이동식 CCTV 설치비용	3,090					6,180
	매출손실(매년 25%씩 감소)	76,847	57,635	43,227	32,420	24,315	1,222,391
	매출손실(매년 50%씩 감소)	10,120	5,060	2,530	1,265	632	647,036
감독당국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비용						2,000
	지정장치장 비용(최소)	137,250	137,250	137,250	137,250	137,250	1,295,250
	지정장치장 비용(최대)	456,250	456,250	456,250	456,250	456,250	4,356,250
	총비용(최소)	234,707	194,885	180,477	169,670	161,565	2,560,861
	현재가치	170,220	133,971	117,598	104,793	94,585	2,021,474
	총비용(최대)	486,980	461,310	458,780	457,515	456,882	5,046,506
	현재가치	353,180	317,121	298,940	282,574	267,472	3,850,714

※ 할인율 5.5% 적용

⑥ 단계 6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활어업체 시설관리 및 매출손실비용

- CCTV 설치, 행정제재로 인한 매출감소로 활어업체가 연간 평균 688백만원 또는 1,263백만원을 부담

- 감독당국 장치장 설치·운영비용

- 지정장치장 설치·운영으로 감독당국이 연간 평균 1,297백만원 또는 4,358백만원을 부담

☞ 규제도입으로 10년동안 부담해야 하는 연간 평균비용은 현재가치로 2,021백만원 또는 3,850백만원

2)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분석목적>

- 규제가 발생시키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규제로 인해 기대되는 문제의 감소나 개선 사항들을 열거하고, 이런 효과의 가치를 측정가능한 지표를 이용하여 계량화하여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비교하기 위한 것

<분석절차>

단계 1: 편익항목의 식별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결과, 즉 잠재적 편익을 열거

단계 2: 수혜자 식별

어떤 그룹이 수혜를 받는지 결정

단계 3: 편익 추정지표 및 방법 결정

편익 추정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 값을 계산할 방법을 결정

단계 4: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규제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표 값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추정

단계 5: 추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각 지표가 공통의 화폐단위로 환원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화폐단위로 환산

단계 6: 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리

규제를 시행할 경우 누가, 언제, 무엇을 얻게 되는지 설명

■ 단계 1: 편익항목의 식별

-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은 대부분 문제현상의 완화 또는 감소로 발생
 - 편익은 일반적으로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으로 구분. 편익 식별시에는 각 대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직접 또는 간접적 편익을 식별할 수 있도록 넓은 시각 선택
 - 가치부여 자체가 어려운 경우(예 : 공원보전의 가치)에는 비시장재의 가치 측정 방법을 이용. 예를 들어 공원보전의 원화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공원의 면적이나 방문객수, 공원이 갖는 의미 등은 파악 가능
 - 통계적 생명의 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통계적 생명의 가치는 인간 개개인의 고유한 생명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확률 변화에 따른 지불용의액(willingness to pay)을 의미
 - 생명의 가치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방법은 그 생명이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대소득의 현재가치를 계산
- * 통상적으로 생명의 가치는 균일하지 않으며, 제반환경을 감안하여 산출. 필요시 전문연구기관 활용 필요

< 생명의 가치 분석사례 : 경찰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

- 인간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 생명이 일생 동안 벌어들이 수 있는 장래 기대소득의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경우
 - 그 사람의 나이, 능력, 교육 정도 등의 변수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보험금 지급 급여 등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택할 수도 있음
- 인명피해 감소로 인한 규제편익 추정
 - 생명가치의 추정을 위하여 사망 및 부상 시 지급한 산재보험의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활용 (유족급여는 연금을 제외한 일시금 적용)
 - 국내 연도별 총기사고 현황은 2009년 사망 10건, 부상 8건으로 총 18건이며 2010년(6월30일 기준) 사망 5건, 부상 6건 총 11건

【 총기 사고 현황 】 (2010.6.30 기준) (단위 : 명)

연 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 명 피 해	계	41	34	32	18	11
	사 망	23	19	12	10	5
	부 상	18	16	20	8	6

출처 : 경찰청

- 2010년 말 급여종류별 지급실적에 따르면 사망 시 1인당 지급금액은 약 8,700만원, 부상 시 1인당 지급금액은 약 6,600만원

【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 (단위 : 명, 건, 백만원, %)

		'09년말		'10년말	
		수급자	금 액	수급자	금 액
합 계		235,984	3,244,662	235,751	3,279,760
사 망	유 족 급 여	1,535	114,072	1,401	108,151
	장 의 비	2,230	21,963	2,199	22,533
부 상	장 해 급 여	74,584	1,291,084	88,864	1,397,873
	요 양 급 여	195,486	800,171	182,545	766,535
	상 병 연 금	6,532	189,956	6,451	182,866
	휴 업 급 여	122,656	786,075	121,836	735,066
	간 병 급 여	4,025	39,366	4,584	44,263
	직업재활급여	780	1,977	1,752	4,474

출처 : 근로복지공단

※ 급여종류간 중복이 발생하는 수급자는 합계에서 1명으로 계산

- 규제강화로 인하여 사망 및 부상이 없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인명피해 감소에 따른 편익은 2010년(6월30일 기준) 사망 43,500만원, 부상 39,600만원으로 최대 83,100만원의 편익발생

2010년 기준 편익계산

a : 2010년 사망 시 1인당 지급액 8,700만원

=> 사망 급여종류별 지급금액/수급자 수

b : 2010년 부상 시 1인당 지급액 6,600만원

=> 부상 급여종류별 지급금액/수급자 수

◇ 규제강화로 인한 편익 = (a X 2010년 사망자 5명) + (b X 2010년 부상자 6명)

=> (8,700만원 X 5) + (6,600만원 X 6) = 83,100만원

※ 위 규제편익을 위한 생명가치의 추정은 산재보험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최소한으로 지급하려는 보험회사의 보수적인 특성상 기대편익은 최소값으로 볼 수 있음

■ 단계 2: 수혜자 식별

- 규제가 영향을 미치는 그룹, 산업 또는 시장을 검토
 - 규제로 영향받는 산업, 관련 기업의 수와 규모 등을 파악.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을 금지하려 한다면 이 물질의 제조업자, 납품업자, 그리고 이 물질을 투입재로 사용하는 생산업자·소비자 등을 고려

■ 단계 3: 편익 추정지표 및 방법결정

- 식별된 편익을 대표하는 수치나 지표를 선정
 - 사례) 어종보호를 위한 규제: 어종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의 지표로 매년 잡히는 해당 어종 물고기수(양)를 이용
- 선정하려는 지표에 관한 정보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지표(proxy indicators)를 이용
 - 사례) 독극물 배출규제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독극물 오염자 수를 알아야하지만 이를 알아내기는 어렵고 대신 오염신고센터 등에 걸려온 신고건수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나머지 각 단계의 분석요령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분석 절차 참조

<작성연습 1>

◆ 고리의 대부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법령을 개정하여 최고 이자율을 64%에서 49%로 인하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때 편익을 추정한다고 하면

- 대형 대부업체 이자율을 인하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감소분과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개인 및 중소형 대부업체를 이용함에 따른 개인 및 중소형 대부업체의 수익증가를 편익으로 계산

□ 규제의 편익분석

① 단계 1 : 편익항목의 식별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부담 감소 편익
 - 대형 대부업체 이자율을 인하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자부담이 경감됨. 이 때 경감되는 이자비용이 편익
- 개인 및 중소형 대부업체 수익증가 편익
 - 신용이 나쁜 사람은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됨. 이 때 부담하는 이자비용이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에게는 편익

② 단계 2 : 수혜자 식별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부담 감소 편익
 - * 최고 이자율을 낮추어도 대형 대부업체 이용이 가능한 자
- 개인 및 중소형 대부업체* 수익증가 편익
 - * 저신용자가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때, 이용하게 되는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

③ 단계 3 : 편익 추정지표 및 방법 결정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부담 감소 편익

$$\text{이자부담 감소액} = \text{평균대출액} \times \text{이용자} \times \text{이자인하율}$$

 - 평균대출액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대출액으로 계산
 - 이용자 : 최고 이자율을 낮춰도 대형 대부업체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로 현재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에서 최고 이자율 인하로 이용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한 이용자 숫자
 - 이자인하율 : 최고 이자 인하율인 15%
-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 수익증가 편익

$$\text{수익 증가액} = \text{평균대출액} \times \text{이용자} \times \text{이익률}$$

 - 평균대출액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평균대출액으로 계산
 - 이용자 : 최고 이자율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
 - 이익률 :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 이익률인 113%(평균 이율 168%-평균비용 55%)

④ 단계 4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 ⑤ 단계 5 :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비용 감소 편익

- 대부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자율의 인하(15%p)로 기존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이 5,133억원 감소(580만원 × 15% × 59만명)

* 대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평균 대출액 : 580만원

* 최고 이자율을 낮추어도 대형 대부업체 이용이 가능한 이용자수 59만명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수(약 67만명) - 최고 이자율 인상으로 대형 대부업체로 부터 대출이 어려운 이용자(약 8만명)

○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 수익증가 편익

- 상대적으로 신용이 나쁜 8만명은 개인 및 중소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개인 및 중소대부업체는 수익이 약 5,243억원 증가 예상(580만원 × 113% × 8만명)

* 580만원 : 1인당 평균 대출액

* 113% : 개인 및 중소형 대부업체의 이익율(평균 이율 168%-평균비용 55%)

< 향후 10년간 최고이자율 인하로 인한 편익(억원) >

연도	대형 중소기업 이용자 이자부담 감소 편익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 수익 증가 편익	편익합계	현재가치
2005	5,133	5,243	10,376	9835
2006	5,133	5,243	10,376	9322
2007	5,133	5,243	10,376	8836
2008	5,133	5,243	10,376	8375
2009	5,133	5,243	10,376	7939
2010	5,133	5,243	10,376	7525
2011	5,133	5,243	10,376	7132
2012	5,133	5,243	10,376	6760
2013	5,133	5,243	10,376	6408
2014	5,133	5,243	10,376	6074
총계	51,330	52,430	103,760	78,206

* 할인율 5.5% 적용

⑥ 단계 6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 이자비용 감소 편익

·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는 연간 5,133억원의 이자비용 부담 경감

-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 수익증가 편익

· 개인 및 중소 대부업체는 연간 5,243억원 수익증가

☞ 규제도입으로 10년동안의 편익은 연간 약 1조 376억원으로 추정되고, 현재가치로는 약 7,820억원

<작성연습 2>

◆ 생산국 및 품질 등이 불분명한 저가의 불량 목재펠릿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산물의 규격 및 품질을 표시하는 대상에 목재펠릿을 추가 지정하는 경우

○ 불량 목재펠릿 유통 근절로 인한 펠릿보일러 A/S 비용 절감액과 펠릿보일러 발열량 향상으로 인한 비용절감액을 편익으로 계산

□ 규제의 편익분석

① 단계 1 : 편익항목의 식별

- 펠릿 보일러 A/S 비용 감소편익
 - 펠릿 보일러 고장의 주요원인중 하나인 불량 목재펠릿 유통 근절에 따라 A/S 비용이 절감됨. 이 때 경감되는 A/S 비용이 편익
- 펠릿 보일러 발열량 향상으로 인한 비용 절감편익
 - 발열량이 낮은 불량 목재펠릿 유통 근절로 펠릿 보일러 발열량 향상이 기대됨. 이 때 경감되는 목재펠릿 비용절감액이 편익

② 단계 2 : 수혜자 식별

- 펠릿 보일러 사용자 7천가구

③ 단계 3 : 편익 추정지표 및 방법 결정

- 펠릿 보일러 A/S 비용감소 편익

$$= \text{보일러 보급대수} \times \text{월 1회이상 A/S 비율} \times \text{연료문제 A/S 비율} \times \text{1회 A/S비용}$$

- 보일러 보급대수 : 총 7천대
- 월 1회이상 A/S 비율 : 14.2%(주부 모니터단 조사결과 활용)
- A/S 신청건수 중 불량 펠릿목재로 인한 A/S 비율 : 20%(주부 모니터단 조사결과 활용)
- 1회 A/S 비용 : 100,000원

- 펠릿 보일러 발열량 향상으로 인한 비용절감 편익

$$= \text{목재펠릿 사용량} \times \text{불량 펠릿 유통비율} \times \text{발열량 향상비율} \times \text{톤당 동일 발열량당 가격}$$

- 목재펠릿 사용량 : 연간 21,000톤(펠릿 보일러 7천대, 대당 연간 3톤 사용)
- 불량 펠릿 유통비율 : 10%로 추정
- 발열량 향상 비율 : 20%로 추정
- 동일 발열량당 가격 : 89원

④ 단계 4 : 규제실행의 결과 예측 / ⑤ 단계 5 : 측정치를 화폐단위로 전환

○ 펠릿 보일러 A/S 비용감소 편익 : 19,880천원

- 7,000대(총 보급대수) × 14.2%(994대 : 월 1회이상 A/S대수) × 20%(198대 : 연료 문제 A/S대수) × 100,000원(1회A/S비용) = 19,880천원

○ 펠릿 보일러 발열량 향상으로 인한 비용절감 편익 : 37,380천원

- 21,000톤(펠릿보일러 7,000대, 대당 연간 3톤 목재펠릿사용) × 10%(저 품질 펠릿) × 20%(발열량 향상) × 89천원(톤당 동일 발열량 당 가격) = 37,380천원

※ 목재펠릿 가격 400원/kg 경우 동일발열량(Mcal)당 가격 : 89원(400원/4.5Mcal)

* 목재펠릿 kg당 발열량 4.5Mcal

< 향후 10년간 목재펠릿 규격·품질 지정으로 인한 편익(천원) >

연도	A/S 비용절감 편익	발열량 향상 편익	편익합계	현재가치
2010	19,880	37,380	57,260	54,274
2011	19,880	37,380	57,260	51,445
2012	19,880	37,380	57,260	48,763
2013	19,880	37,380	57,260	46,221
2014	19,880	37,380	57,260	43,811
2015	19,880	37,380	57,260	41,527
2016	19,880	37,380	57,260	39,362
2017	19,880	37,380	57,260	37,310
2018	19,880	37,380	57,260	35,365
2019	19,880	37,380	57,260	33,521
총계	198,800	373,800	572,600	431,599

* 할인율 5.5% 적용

⑥ 단계 6 : 분석결과 요약 및 정리

- 펠릿 보일러 A/S 비용감소 편익 : 연간 19,880천원

- 펠릿 보일러 발열량 향상으로 인한 비용절감 편익 : 연간 37,380천원

☞ 규제도입으로 10년동안의 총 편익은 약 5억7천2백만원으로 추정되고, 현재가치로 약 4억3천1백만원

3)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분석목적>

- 규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편익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대안비교를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 시행시 발생하는 편익이 비용을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비교

<작성연습>

-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경우 관련 대안을 상정해 보고 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산출하여 상호 비교하고 그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

□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의 배출허용 수준별로 3가지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		
- 우리와 산업시설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배출기준을 적용할 경우(대안1)와 환경부가 산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저감전략상의 단계별 배출기준(대안2, 3)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		
	비용분석	편익분석
구성 항목	① 다이옥신 배출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대상 산업시설 360개) ② 자가측정 및 주변지역 영향평가 비용	다이옥신 배출 저감에 따른 ①의료비용감소 ②노동손실감소
대안1	일본 배출기준 적용시 (다이옥신 배출 저감량 34.6g)	
	① 136억원 + ② 53.2억 → 총 189억원	① 631.5억원 + ② 84.1억원 → 총 716억원
대안2	저감전략 1단계 기준 적용시 (다이옥신 배출 저감량 51.4g)	
	① 202억원 + ② 53.2억원 → 총 255억원	① 938억원 + ② 124.9억원 → 총 1,063억원
대안3	저감전략 2단계 기준 적용시 (다이옥신 배출 저감량 74.8g)	
	① 373억원 + ② 53.2억 → 총 426억원	① 1,365.1억원 + ② 181.8억원 → 총 1,546억원
○ 상기 3가지 대안중		
- 순편익은 대안1이 527억원, 대안2가 808억원, 대안3가 1,120억원이고, 비용대 편익비는 대안1이 3.8, 대안2가 4.2, 대안3이 3.6임		
- 순편익은 대안3이 가장 높으나, 도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대 편익비가 가장 높은 대안2를 선택, 배출허용기준 설정		

2-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분석목적>

-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임
 - * 20인 미만 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은 100인 이상 중기업의 규제부담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파악(행정연구원, 2012)
 - 기업규모별 규제부담 능력을 분석하여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이 분석목적임
 - * 미국, 영국 등 해외선진국에서는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집행 가능 여부(집행·적용 시기 유예, 면제·일부 완화 등)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 [참고] 상시근로자, 매출액(자본금) 등에 따른 중소기업 분류 기준

<작성방법>

□ 상정된 대안을 아래의 절차에 따라 분석

① 중소기업 관련 규제인지 여부를 확인

- 피규제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아닌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재하고 분석 생략

<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 영리 목적의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 : (예) 대기업, 중견기업
-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예) 어린이집 등
-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예)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② 기업규모별 현황 분석 및 규제부담비율을 산출 비교

- 피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현황(기업수, 평균 매출액 등)을 파악하여 기재하고,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별로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표본 조사

* 표본조사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최소 소상공인 3개, 소기업 2개, 중기업 1개, 대기업 1개 그룹 이상으로 분류

- 기업규모별로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을 산출하여 기업규모별 규제 부담 수준을 비교 분석

* 규제부담비율(% , 기업규모별) = (규제비용 ÷ 평균 매출액) × 100

* 표본조사인 경우에는 개별기업의 규제부담비율을 산출

③ 중소기업의 의견을 청취

- 공청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규모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 수준 및 개선 요구사항 등을 기술

* 최소 의견청취 기업수 : 소상공인 3개, 소기업 2개, 중기업 1개

- 의견 청취기업의 현황(매출액, 영업이익, 상시근로자 수 등)과 규제부담 비율을 산출하여 기재

④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 비교, 중소기업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 제시

- 규제 신설·강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 적용(집행·적용시기 유예, 규제 면제·일부 완화 등)이 가능한지 또는 필요한 규제방식인지 검토

< 규제 차등화 유형 및 사례 >

- 규제 내용의 차등화(면제 또는 기준·강도의 완화)
 - (영유아보육법) 여성 근로자 300명 미만,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면제
- 규제 절차의 차등화(절차, 구비서류 부담 완화 등)
 - (소득세법)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 기장 대신 '간편장부' 작성을 허용
- 규제 시기의 완화(준수·이행시기 완화, 한시적 유예 등)
 - (식품위생법) 기업규모(상시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적용 시기를 '06년부터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 제재수단의 차등화(규제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 등)
 - (상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지침) 상법을 위반한 경우 자본금 규모(소규모, 일반, 대규모 회사로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 규제 차등 적용 등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

< 예시 : 규제 차등 적용 등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가 어려운 경우 >

- 피규제 대상 기업의 기업규모가 비슷하여 차이가 없는 경우
 -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다중이용업소(음식점, PC방, 노래방, 고시원 등)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
-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되어 규제완화가 어려운 경우
 - 화장품 중금속 관리기준은 중소기업에 검사비용 부담을 주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제품에 적용
- 규제비용이 경미하여 차등 적용 등 규제완화가 불필요한 경우
 -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 참고 >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해당 업종	분류 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운수업	H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구분

해 당 업 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조업	10명 미만	10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5명 미만	5명 이상 ~ 50명 미만	50명 이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5명 미만	5명 이상 ~ 10명 미만	10명 이상

<작성연습 1>

-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유통(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등록하게 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평가를 의무화하려는 경우
- 기업 규모별 현황(기업수, 매출액 등)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 산출과 중소기업의 의견청취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규제 차등적용 등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한다.

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확인

- 화학물질을 유통(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
- 피규제 대상 기업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0여개 이상의 업종

② 피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별 현황

※ 동 규제의 적용을 받는 업종 중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 화학물질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현황을 대표적으로 파악함

- 경제총조사(2010년 기준) 자료에 의하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총 사업체 수는 7,300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전체의 96.1%인 7,261개
 - 기업규모별 기업 수는 소상공인이 4,833개(66.2%), 소기업 2,009개(27.5%), 중기업 419개(5.7%), 300인 이상 기업이 39개(0.5%)임
 - 중소기업의 총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의 82.1%인 103,927명이고, 총 매출액은 전체의 63.5%인 78조 7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현황 >

기업규모	기업수		상시근로자 수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합계 (평균 매출액)	
	개	%	명	%	백만원	%
1~9인	4,833	66.2	20,568 (4.3)	16.2	4,970,404 (1,028)	4.0
10~49인	2,009	27.5	40,645 (20.2)	32.1	15,752,943 (7,841)	12.7
50~299인	419	5.7	42,714 (101.9)	33.7	58,037,537 (138,514)	46.8
300인 이상	39	0.5	22,727 (582.7)	17.9	45,302,296 (1,161,597)	36.5
합계	7,300	100.0	126,654	100.0	124,063,180	100.0

* 자료: 통계청(2010), 경제총조사

③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

- 규제비용은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개수, 종류, 생산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평균적으로 화학물질 1개를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등록비용(75백만원)을 적용
-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을 산출한 결과, 평균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은 소상공인 7.3%, 소기업 0.95%, 중기업 0.05%, 300인 이상은 0.006%로 소상공인의 규제부담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

(단위 : 백만원, 개, %)

기업규모	규제비용 (A)	기업수 (B)	평균 매출액 (C)	평균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A÷C)×100
1~9인	75	4,833	1,028	7.3
10~49인	75	2,009	7,841	0.95%
50~299인	75	419	138,514	0.05%
300인 이상	75	39	1,161,597	0.006%

④ 중소기업 의견 청취 결과

- 중소기업은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과다하여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규제 도입 철회, 시행시기 유예, 등록비용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

< 기업규모별 의견청취 결과>

기업규모	기업명	의견 청취 결과
1~9인	A사	매출액은 8억원, 영업이익은 6천만원에 불과하여 화학물질 등록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부담이 크므로 규제 도입 철회 필요
	B사	매출액이 6억원 가량인 당사로서는 화학물질 등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규제 도입 철회 필요
	C사	규제 도입을 철회하거나 일정기간 시행 유예 필요
	D사	화학물질 등록비용이 부담이 되므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등록비용의 절반을 정부에서 지원
	E사	업황이 좋지 않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로 유예기간 없이 시행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크므로 일정기간 시행 유예 필요

기업규모	기업명	의견 청취 결과
10~49인	F사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준 완화 필요
	G사	화학물질 규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중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중 규제 문제 해소 필요
	H사	전방산업의 불황으로 인해 수년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는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
50~299인	I사	비슷한 규모의 타 기업과 달리 당사는 생산하는 화학물질의 종류가 많아 규제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생산량이 적은 화학물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J사	EU로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에 따라 5년 전에 화학물질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국내에서 동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영향은 미미

< 의견 청취기업의 일반현황 >

기업명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생산품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A사	부산	4	801	56	접착제	9.4%
B사	서울	3	541	39	에폭시 조성물	13.7%
C사	전남	6	1,056	98	방수코팅제	7.1%
D사	경기	7	4,095	368	수산화칼륨	1.8%
E사	경남	8	1,688	-26	나노분산용액	4.4%
F사	울산	20	13,767	1,033	가성소다	0.5%
G사	충남	33	24,179	1,865	PVC안정제	0.3%
H사	경북	41	20,988	-1,592	삼산화안티몬	0.4%
I사	대전	68	56,077	3,695	전해액 첨가제	0.1%
J사	전북	202	60,385	5,416	도료 방수제	0.1%

*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 [규제비용(75백만원) ÷ 개별기업의 매출액] × 100

⑤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

○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 산출과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가 작을 수록 규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하는 등의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함

(1) 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완화

- (당초 계획) 화학물질 유통량(제조·수입)이 연간 0.5톤 이상인 사업체
→ (완화) 화학물질 유통량(제조·수입)이 연간 1톤 이상인 사업체

(2) 화학물질 등록 시기를 일정기간 유예

- 시행령으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함

(3) 유통량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를 면제하고 또한, 유통량을 기준으로 위해성 평가 의무를 단계적으로 부과

- 유통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의무를 면제
- 유통량이 연간 100톤 이상은 2015년, 70톤 이상은 2017년, 50톤 이상은 2018년, 20톤 이하는 2019년, 10톤 이상은 2020년부터 위해성 평가 의무 부과

※ 기업규모가 클수록 화학물질 유통량이 많으므로 유통량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주는 실질적인 방안

* 기업규모별 화학물질 유통량 비중(%) : 대기업 74.0, 중기업 21.7, 소기업 4.3

<작성연습 2>

- ◆ 식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그간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HACCP(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우
 - 기업 규모별 현황(기업수, 매출액 등)에 대한 통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5개 이상의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표본기업의 규제부담비율 산출과 의견 청취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규제 차등 적용 등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한다.

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확인

- 피규제 대상 760개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 관련 규제에 해당

구분	어묵류	냉동 수산식품	냉동 식품류	빙과류	비가열 음료	레토르트 식품	계
업소(개)	149	172	288	57	36	58	760
비율(%)	19.61	22.63	37.89	7.5	4.74	7.63	100

* 식품제조업체 중 대기업은 0.4%에 불과(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피규제 대상 기업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식료품 제조업'

② 피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별 현황(표본조사)

- 기업규모별 기업수, 매출액 등에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기업규모별로 5개 표본기업을 선정하여 표본조사 실시

기업규모	기업명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생산품
1~9인	A사	경기	7	755	24	어묵
	B사	부산	9	933	56	냉동 수산식품
	C사	전북	8	1,200	63	냉동식품
	D사	경기	9	1,525	88	어묵
	E사	전남	6	965	-26	냉동 수산식품
10~49인	F사	부산	20	3,564	189	어묵
	G사	충남	17	2,189	164	냉동 수산식품
	H사	대전	19	2,315	-103	냉동식품
	I사	대구	35	6,745	363	냉동식품
	J사	경기	38	3,550	254	냉동식품

기업규모	기업명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생산품
50~299인	K사	부산	58	8,924	465	어묵
	L사	경남	95	22,149	1,460	레토르트 식품
	M사	부산	160	16,830	920	냉동 수산식품
	N사	경기	170	15,448	834	냉동식품
	O사	부산	214	36,954	2,130	냉동식품
300인 이상	P사	서울	629	454,177	8,497	어묵 등
	Q사	서울	3,151	1,686,637	95,702	비가열 음료 등
	R사	경기	1,528	789,102	66,820	빙과류 등
	S사	충북	375	110,245	6,388	레토르트 식품
	T사	경기	574	272,904	6,006	냉동식품

③ 표본기업의 규제부담비율

- 규제비용은 설비 개보수 면적, 마감 자재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정확한 산출이 어려우나, 전문공사업체에서 제시한 1㎡당 시설비(75만원)에 개보수가 필요한 작업장 면적을 곱하여 산출
- 표본기업의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은 소상공인 3.0 ~ 6.1%, 소기업 1.5% ~ 2.7%, 중기업 0.8% ~ 1.6%, 300인 이상은 0.2% ~ 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가 클수록 규제비용도 커짐에 따라 동일한 규제비용을 부과하는 규제에 비해 기업규모별 규제부담비율 차이는 크지 않음
 - 대기업은 위생적인 설비와 작업장을 이미 구비하고 있어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

기업 규모	기업명	규제비용 (A)	매출액 (B)	매출액대비 규제부담비율 (A÷B)×100
1~9인	A사	46	755	6.1
	B사	48	933	5.1
	C사	36	1,200	3.0
	D사	64	1,525	4.2
	E사	40	965	4.1

기업 규모	기업명	규제비용 (A)	매출액 (B)	매출액대비 규제부담비율 (A÷B)×100
10~49인	F사	54	3,564	1.5
	G사	60	2,189	2.7
	H사	50	2,315	2.1
	I사	124	6,745	1.8
	J사	78	3,550	2.2
50~299인	K사	104	8,924	1.2
	L사	206	22,149	0.9
	M사	204	16,830	1.2
	N사	246	15,448	1.6
	O사	648	76,074	0.8
300인 이상	P사	1,200	454,177	0.3
	Q사	3,800	1,686,637	0.2
	R사	2,460	789,102	0.3
	S사	820	110,245	0.7
	T사	998	272,904	0.4

④ 중소기업 의견 청취 결과

- 소상공인(1~9인)과 소기업(10~49인)은 HACCP 적용 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규제 도입 철회, 자금과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
- 중기업(50~299인)은 HACCP 적용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부담이 되더라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기업 규모	기업명	의견 내용
1~9인	A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작은 당사로서는 4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HACCP 시설비는 큰 부담이므로 규제 도입 철회
	B사	HACCP 시설비가 과도하므로 의무화 철회
	C사	자금, 컨설팅 등의 정부 지원 필요
	D사	영세한 업체의 부담이 매우 크므로 규제 면제 필요
	E사	부채비율이 높아 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 받을 여건이 안 되므로 정책자금 지원 필요

기업 규모	기업명	의견 내용
10~49인	F사	소규모 기업이 부담 없이 HACCP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
	G사	HACCP에 대한 전문지식과 자금이 부족하므로 컨설팅 및 시설자금 지원 필요
	H사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기 위해 HACCP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금도 확보한 상태여서 부담 없음
	I사	현재와 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 적용 계획 철회
	J사	HACCP 적용 의무화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부담이 크므로 시설 자금 및 컨설팅 지원 필요
50~299인	K사	HACCP 인증 획득이 매출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담은 되지만 추진할 계획
	L사	시설 개보수 자금이 부담은 되지만 HACCP 적용 의무화는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
	M사	수년 전에 공장을 신축한 관계로 미흡한 부분만 개보수하면 HACCP 인증이 가능하므로 규제에 의한 영향은 미미함
	N사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이 없어 HACCP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컨설팅 지원 필요
	O사	HACCP 적용 의무화 정책에 공감은 하지만,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의무화 필요

⑤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

- HACCP 적용을 의무화 할 경우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기업이라도 HACCP 적용은 불가피
- 다만, 소규모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HACCP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함

< 기업규모별 시행 시기 >

- 연매출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1인 이상 : '06.9월 시행
- 연매출 5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21인 이상 : '08.9월 시행
- 연매출 1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인 이상 : '10.9월 시행
- 연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 '12.9월 시행

<작성연습 3>

- ◆ 출산율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과 무급 2일로 확대하려는 경우
 - 규제비용부담이 매우 경미한 경우, 중소기업의 의견 청취 결과와 의견청취 기업의 규제부담비율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을 모색한다.

① 중소기업 관련 규제 여부 확인

- 전산업의 모든 기업이 피규제 대상이므로 중소기업 규제에 해당
- 피규제 대상 기업의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모든 업종

② 피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별 현황

- 전산업의 사업체 수는 3,355,470개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4명인 영세기업이 전체의 83.5%인 2,804,620개

기업규모	기업수(개)	기업규모	기업수(개)	기업규모	기업수(개)
1~4명	2,804,620	20~49명	82,251	200~299명	2,524
5~9명	283,154	50~99명	27,102	300명 이상	3,291
10~19명	142,500	100~199명	10,028	계	3,355,470

* 기업규모별 매출액은 통계를 확보할 수 없어 기재 생략

③ 중소기업 의견 청취 결과

-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급 휴가비 지출보다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생산 손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별 의견청취 결과 >

기업규모	기업명	의견 내용
1~9인	A사	휴가비 지출은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문제
	B사	영세한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
	C사	현재도 많은 규제로 인해 경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으므로 규제 도입을 철회
10~49인	D사	중소기업은 인력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므로 시행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
	E사	유급 휴가 3일을 무급으로 변경 필요
50~299인	F사	휴가일수는 종전과 같이 3일로 하되 무급을 유급으로 전환
	G사	휴가비 보다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생산차질이 더 큰 부담

* 대표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 의견 청취 기업의 일반현황 >

기업명	소재지	상시 근로자수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생산품	매출액 대비 규제부담비율
A사	경기	8	689	64	배터리 부품	0.031%
B사	전남	7	748	46	건어물	0.029%
C사	충남	8	965	55	콘크리트 벽돌	0.023%
D사	서울	48	4,749	-36	부직포	0.01%
E사	경기	39	6,820	504	금형	0.007%
F사	충북	160	42,129	3,246	자동차 부품	0.003%
G사	인천	96	19,984	1,119	열교환기	0.006%

* 비용편익분석 결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유급 휴가비는 평균적으로 상시근로자가 1~9인 기업은 22만원, 10~49인 기업은 51.9만원, 50~299인 기업은 128.4만원인 것으로 추정

④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 방안

-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할 경우 인력 공백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 간접손실이 크다는 의견이 많아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규제부담완화 방안을 마련
 - 상시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인 영세기업은 근로자 1인의 공백으로 인한 부담이 크므로 규제를 면제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을 1년간 유예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분석목적>

-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 우리의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한 행정 규제 또는 제도, Global Standard에 부합하여야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피규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이 동 평가요소의 분석 목적임

<작성방법>

- 신설 또는 강화하려는 규제와 관련된 국내·외 유사사례 및 제도를 확인하고 적정한 지 여부, 국제적 기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 규제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 관리감독, 보고·신고) 등으로 인한 피규제자의 행정부담을 기술하고, 절차 간소화, 구비서류 감축 등이 가능한 요소가 없는 지 검토·기술함

<작성연습1>

- ◆ 전기용품의 자율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강제인증 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 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후 판매하도록 할 경우
- 자율안전인증제도와 관련한 해외사례 등을 확인·기술하고, 자율안전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기업의 행정적 부담의 증감여부, 감축방안 등을 검토·기술함

- 현행 안전인증제도 및 해외사례 검토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247개 품목)을 제조하는 자(외국제조업자 포함)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장검사 및 제동시험을 거쳐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판매 가능
 - 신개발제품 보급 증가, 인증시장 개발 등으로 기존 안전인증제도의 개선과 자율안전인증제도 도입 필요성
 - * FTA, PDA 협상시 자율안전확인제도의 도입요구 증가
 - 민간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제도 채택이 국제적인 추세

<참고 : 주요국가의 전기품목 안전관리제도>

구 분	내 용	인증기관	비고
미국(UL)	·대상 : 가정용 전기기기 및 부품 등 10,200여 품목 ·인증업체수 : 40,000여개사 ·사후관리 : 정기 2-4회/년, 수시	Underwriters Laboratories	민간인증 (사실상 강제)
유럽(CE)	·대상 : 모든 저전압전기기기 (50-1000V) ·사후관리 : 시판품 조사	각 회원국이 재정	자율안전확인
일본(PSE)	·대상 : 가정용전기기기 112품목 (자율안전확인 340품목) ·사후관리 : 1회/년	6개 민간인증기관	제3자검정, 자율안전확인
중국(CCC)	·대상 : 가정용전기기기 100종 ·인증업체수 : 20,000여개사 ·사후관리 : 1회/년	12개 민간인증기관	강제인증
싱가폴(안전)	·대상 : 가정용전기기기 14종 ·사후관리 : 시판품조사(1회/월) ·인증서 유효기관: 3년	PSB Co.	강제인증
대만(S)	·대상 : 전기기기 41종 ·사후관리 : 제품에 따라 별도 지정	정부 (표준검정국)	강제인증

※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은 인증대상을 품목이 아닌 종류로 구분

○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안전인증대상 품목 24개 품목중 100여개 품목은 자율안전 확인제도 대상품목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이 경우 최초 인증시 정보업체에 대한 공장실사와 연1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제품시험·공장실사)의 부담이 오히려 감축되는 효과 발생 예상

<안전인증 절차 비교>

구 분		현행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제도
제품시험	안전성시험	○	○
	전자파적합성시험	○	○
공장확인	제도·검사설비	○	확인안함
	원자재·공정검사	○	확인안함
	제품검사	○	확인안함
	검사설비 감·교정	○	확인안함
인증·신고		인증서발급	신고서발급
정기심사 (사후관리)	제품시험(안전성+ 전자파 적합성)	○	정기심사 없음 신고유효기간 5년
	공장확인	○	

※ 정기심사는 연1회 이상 실시

<작성연습 2>

◆ 대부업자가 준수하여야할 최고 이자율을 인하여 규정하려는 경우

- 자금 대부와 관련하여 이자율 상한을 두어 규제하는 사례가 있는 지, 해외사례 등을 확인하여 이자율 상한이 적정지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한다.

○ 현행 최고 이자율(법 70%, 시행령 66%)을 개정안(법 60%, 시행령 49%)과 같이 인하는 것은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상한, 일본 등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 이자제한법('07.6)에서는 최고 이자율을 법에서 40%, 시행령에서 30%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대부업법령상의 최고 이자율과의 차이를 축소 가능
 - * 법 30%p, 시행령 36%p(현행 격차)를 법 20%p, 시행령 19%p(개정시)로 축소
- 일본의 경우 출자법 등에서 이자율 상한을 일반인 109.5%, 대부업자 29.2%로 규정

< 참고 : 주요국의 대부업 최고 이자율 규제현황 >

국가	최고이자율 규제
일본	·대금업법 : 연 109.5%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 ·출자법 : 대부업자 연 29.2%,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연 109.5%
미국	·연방차원에서 최고 이자율 규제는 없으며, 주별로 상황에 맞게 규제(44개주에서 주법 또는 판례에 따라 규제) * 주요 주별 최고이자율 규제 Pennsylvania : 개인 6% 이하(25% 이상 형사처벌) Virginia : 개인 8% California : 개인 10% New Jersey : 개인 30%, 기업 50% (60%이상 형사처벌)
프랑스	·평균시장금리 + 1/3 수준으로 매분기 결정(소비법) * 대출금액에 따라 이자상한을 차등 적용
독일	·법령에 의한 최고 이자율 규제는 없음, 단 법원의 판례에 의해 폭리라고 인정한 금리수준(대출유형별 평균이자율의 2배)의 경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분석목적>

-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해 보고, 이해관계자와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규제가 집행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내용과 집행상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임

<작성방법>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기술
 - 이해관계자들과 협의 여부(서면, 공청회 등 협의 방식 및 일시와 장소 등 명시)
 -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명시

<작성연습1>

- ◆ 약취방지법령을 개정하여 약취 지정물질을 추가로 지정하려는 경우
- 약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또는 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시 제기된 의견을 기술하고 이의 반영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기술

- '04.9.1 관련업계와의 간담회
 - 참석자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염색공업협동조합,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등 관계자,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 제기의견: 현재의 8개 약취물질에 14개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설치,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처벌 등 업계의 부담이 예상되므로 반대
 - 조치사항 : 지정약취물질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 등 타국의 사례를 고려한 사항이며, 추가하려는 14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연차적으로 설정,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업계가 느끼는 부담을 덜도록 조치,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1차 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업계 양해)
- '04. 9.10~10.10, 입법예고
 - 제기의견 : 약취물질 추가 지정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실시할 필요성 지적(산업자원부)
 - 조치사항 : 관련업계와의 간담회('04.9.1)를 통해 업계와 협의, 업계도 이해하였음을 산업자원부에 회신

<작성연습2>

- ◆ 한약재에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인 등과의 협의
 - 한약재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성을 제기한 소비자보호단체, 한약재 주요 수출국인 중국 등과의 협의 내용 등을 기술

구분	이해관계인	제기의견	검토의견
05.4 업계 외의 간담회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생약에 적용하는 농약 10개 성분 추가, 개별품목별 잔류허용기준(9개품목 27성분)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반대 ○ 농약 검출이력이 있는 62개 품목에 대해서만 15개 농약 성분을 추가하여 우선 시행한 후, 지속적 모니터링 후 검출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관련 업계의 준비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 설정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03년까지 갈근 등 148품목 1,440건에 대해 농약 136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43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중 10개 성분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 설명, 6개월 유예기간 설정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하여 반영
'05.4, 소 비자보호단 체와 협의	소비자문제 를 연구하는 시민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허용기준 설정안 설명, 특별한 의견 없었음 	
'05.3, WTO/TB T에 잔류 농약설정 기준안 통보·협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류농약 설정 근거에 대한 설명과 중국 관계당국과 협력 및 정보교환 희망의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은 '99~'03년까지 연구 보고된 모니터링 자료를 바탕으로 WHO가이드라인, 유럽약전, 미국약전, 영국약전 등 각 나라의 기준과 중국의 약전 및 '중국약용식물 및 제제수출입 녹색표준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것임을 설명

3-3. 규제 집행의 실효성

<분석목적>

- 행정규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적정하고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집행단계에서 현실성이 부족하여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못한다면 해당규제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된다.

따라서 해당규제를 이행 또는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의 양산을 막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에 분석목적이 있다.

<작성방법>

- 규제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지 검토하고 기술
 - 현행 보급·보편화된 기술로 규제의 집행·이행이 가능한지 검토(기술적 집행 가능성)
 - 현행 행정인력·예산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한지, 인력·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검토(행정적 집행 가능성)
 - 규제의 집행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될 경우 필요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근거 제시
 - 기존 규제가 있을 경우 그 규제의 집행실적이나 규제준수율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제시

<작성연습1>

- ◆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이의 예방을 위해 놀이시설 관리책임자가 안전점검을 실시·기록토록 규제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책임자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 의무 부과는 필요하나, 실제 안전점검 주기, 위반시 제재내용 등을 검토하여 실제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가 없는 지 검토·기술한다.

-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2주 1회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 점검결과 기록을 통한 확인 외에는 안전점검 실시여부의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운 점 등 집행력 확보에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점이 지적됨

-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안전점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점검주기를 월 1회로 완화·조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규정하였음
- *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피해 발생이 빈발하여 안전점검제도에 대해 소비자 단체, 국회 등의 대책 마련요구가 높고, 법적근거는 000의원 등 의원발의에 의해 규정되는 등 사회적·정치적인 지지도 확보하였음

<작성연습2>

- ◆ 수질원격감시체계 도입을 위해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규제하는 경우
 - TMS부착대상 사업장 현황과 TMS기기 제조업체의 기기 공급·설치 능력 등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여 원활히 규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함

- 수질TMS 부착대상 사업장은 전국 969개소
 - 1일 처리능력 200㎥인 공동방지사설 설치·운영 사업장(313개소), 1~3종 사업장(656개소)
- 수질TMS 수입 또는 제조업체는 43개소로서 영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
 - 따라서 폐수배출량 및 처리능력 규모에 따라 부착기한을 달리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시에 부착함에 따른 혼란 방지 필요

< 사업장 규모별 부착기한 >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측정기기 부착기한
1단계 ('06년)	-하수종말처리장 -산단폐수종말처리장	- 10,000㎥/일 이상 하수종말처리시설 -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006.8.31까지
2단계 ('07~'08)	1종 사업장, 공동방지사설	- 10,000㎥/일 미만 하수종말처리시설	2007.4.30까지
		- 4,000㎥/일 이상	2007.8.31까지
		- 2,000㎥/일 이상 4,000㎥/일 미만	2007.9.30까지
2종 사업장, 공동방지사설	- 700㎥/일 이상 2,000㎥/일 미만	2008.9.30까지	
3단계 ('08~'09)	- 3종 사업장 - 공동방지사설	- 200㎥/일 이상 700㎥/일 미만	2009.9.30까지

<규제영향분석 우수사례(작성예시1)>

1. 분석대상 규제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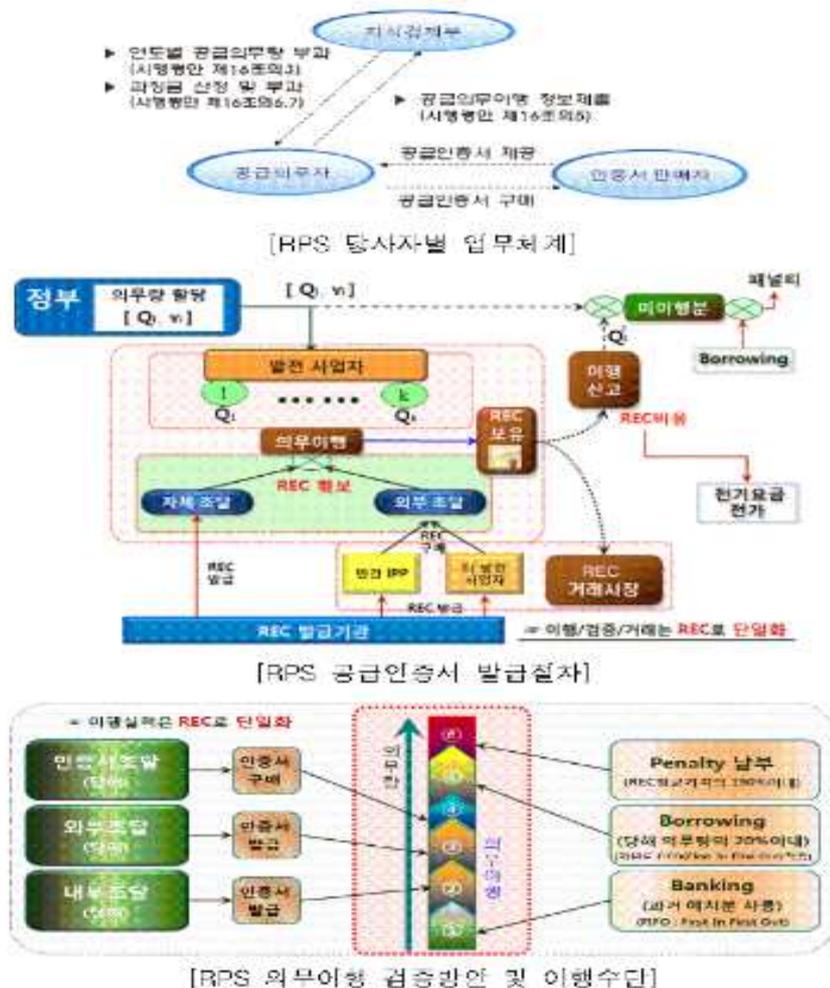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4161																																						
	규제사무명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거래	유형/구분	인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제안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신재생에너지과 -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강남훈 신재생에너지과장 황수성 서기관 홍순파																																						
4. 근거법령명 등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안 제16조의2 ~ 안 제16조의1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규칙 안 제2조의3 ~ 안 제2조의1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h>의견 수렴방식</th> <th>의견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피규제자</td> <td>발전회사</td> <td>한수원, 남동발전 등 6개사</td> <td>간담회, 공청회</td> <td>의무비율 축소</td> </tr> <tr> <td>수자원공사</td> <td>인원: 4,032명</td> <td>간담회, 공청회</td> <td>상동</td> </tr> <tr> <td>민간발전사</td> <td>포스코파워, K-POWER 등 6개사</td> <td>간담회, 공청회</td> <td>초기연도 의무비율 축소</td> </tr> <tr> <td>지역난방공사</td> <td>인원: 1,081명</td> <td>간담회, 공청회</td> <td>상동</td> </tr> <tr> <td>피규제자</td> <td>신재생에너지업체</td> <td>발전사업자 및 제조업체</td> <td>간담회, 공청회</td> <td>태양광시장 및 의무비율 확대요청</td> </tr> <tr> <td rowspan="2">관련부처</td> <td>국토부</td> <td>생략</td> <td>서면</td> <td>이의없음</td> </tr> <tr> <td>환경부</td> <td>생략</td> <td>서면</td> <td>이의없음</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발전회사	한수원, 남동발전 등 6개사	간담회, 공청회	의무비율 축소	수자원공사	인원: 4,032명	간담회, 공청회	상동	민간발전사	포스코파워, K-POWER 등 6개사	간담회, 공청회	초기연도 의무비율 축소	지역난방공사	인원: 1,081명	간담회, 공청회	상동	피규제자	신재생에너지업체	발전사업자 및 제조업체	간담회, 공청회	태양광시장 및 의무비율 확대요청	관련부처	국토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발전회사	한수원, 남동발전 등 6개사	간담회, 공청회	의무비율 축소																																				
	수자원공사	인원: 4,032명	간담회, 공청회	상동																																				
	민간발전사	포스코파워, K-POWER 등 6개사	간담회, 공청회	초기연도 의무비율 축소																																				
	지역난방공사	인원: 1,081명	간담회, 공청회	상동																																				
피규제자	신재생에너지업체	발전사업자 및 제조업체	간담회, 공청회	태양광시장 및 의무비율 확대요청																																				
관련부처	국토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환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고, 자원고갈·기후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육성과 고용창출, 산업화 촉진을 통해 성장동력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 ○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극히 취약하며, 현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과 중장기적 제도 지속이 긴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 [시행령]
 - 공급의무자(제16조의2)
 - 오십만킬로와트 이상 발전설비(신재생 에너지설비 제외) 보유자로 지경부장관이 고시함
 -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제16조의3)
 - 공급의무자의 발전량의 합계 중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12) 2% → ('22) 10%임
 - 태양광에 대한 별도할당량은 ('12) 263GWh → (16) 1,577GWh임
 -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중 20%를 다음연도로 이행을 연기할 수 있음(단, 법시행 후 3년간은 30% 이내)
- [시행규칙]
 - 공급인증서 거래제한(제2조의 8)
 - 오천킬로와트를 초과한 수력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석탄액화·가스화 발전, 폐기물 중 부생가스 발전의 경우, 공급인증서 거래를 제한

8. 규제체계도

< 규제사무명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도입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 화석연료의 고갈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가 절실하나 현재와 같이 자발적(발전차액 지원제도, RPA 등) 정책으로는 보급의 한계점 및 재정문제에 봉착
 - 특히 발전부문에 있어서 OECD 평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수준은 1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에 머물고 있는 상황
-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

* '08년 세계 시장규모(억불)

- 태양광 335 < 메모리반도체 457 < 풍력 518 < (신재생에너지 전체 1,550) < (반도체산업 전체 2,600) < 항공산업 4,300 《 자동차산업 13,400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

- 화석연료 대체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가 필요한 바, 시장원리와 의무성을 기반으로 한 RPS제도 도입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
- RPS제도를 통해 국내 내수시장 확대 및 국내기업의 투자확대 유도를 통해서, 국내 산업 육성 및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 국제적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화석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안보확보 필요성 대두
 -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코펜하겐, '09년 11월)에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천명(2020년, BAU대비 30% 감축)

-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목표 11%는 현 추세와 정책수단에 의해서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
 - * 제도시행후 '09년까지 약 4,600억원의 정부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 공급비율(%)은 1.56('03)→1.10('09 잠정)로 감소함
- 현행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주요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가중
 - * 정부가 정한 전원별 기준가격과 시장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와의 차액을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독일, 스페인 등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 중
- 동 제도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2010년 기준으로 3,400억원, 2011년 4,000억원, 이후 2012년부터 매년 4,200억원 정도 소요전망
-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실효적 정책도입의 필요성도 증대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 규제의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현재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요정책 수단으로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확대에 기여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기준가격의 적정성 판단 곤란, 신재생에너지원간 자원배분 왜곡현상(특히, 태양광발전 분야에 90% 이상의 자원이 쏠림), 정책적 기준가격지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들의 비용절감 노력부족 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됨
 - * 발전차액지원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추이(%)
: ('03) 1.56 → ('05) 1.08 → ('08) 1.00 → ('09) 1.10(잠정)
 - 또한,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급격한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자원(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 분배·집행에 있어 구조적 문제점 발생하여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유지는 어려운 상황임

- 목표 연도('22) 10% 의무비율 수준은 RPS를 도입한 해외사례*와 비교해볼 때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서, 의무이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달성불가능한 수준은 아님

* 목표년도 '20년 ~ '25년경에 '12.5 ~ '25%정도를 공급의무량으로 설정

- 유사한 기존 규제와 중복여부 :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비용(1조 1,827억원/년) < 편익(4조 940억원/년)

- RPS 제도의 시행에 따른 편익이 이로 인한 비용보다 큰 것으로 계산됨
 -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따라 화석연료의 수입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비용감소 및 CO2 절감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 발생
 - 공급의무자는 의무이행에 따른 이행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예상되지만 편익보다는 작음

▷ 비용 산출근거

- '12 ~ '22년동안 공급의무자들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전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연평균 이행비용을 산출

구 분	구 분	금 액(억원)
총이행비용 (11년간)	태양광	27,092
	일 반	103,007
	합 계	130,099
연평균 전가비용		11,827

▷ 편익 산출근거

- '12 ~ '22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원유수입대체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

*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효과도 매우 클 것이나, 객관적 산출이 어려워 제외

① 원유 수입 대체 효과 : 35,779억원/년

$$\text{산 식} : 271,447\text{GWh}/11\text{year} \times 1,000\text{MWh}/\text{GWh} \times 0.215\text{TOE}/\text{MWh} \times 7.33\text{배럴}/\text{TOE} \times 80\$/\text{배럴} \times 1,150\text{원}/\$ = 35,779\text{억원}/\text{년}$$

② CO2 감축 효과 : 5,161억원/년

$$\text{산 식} : 271,447\text{GWh}/11\text{year} \times 1,000\text{MWh}/\text{GWh} \times 0.215\text{TOE}/\text{MWh} \times 0.829\text{TC}/\text{TOE}(\text{IPCC 배출계수}) \times 44/12\text{CO}_2/\text{C}(\text{CO}_2\text{와 C의 분자량비율}) \times 20\text{유로}/\text{TCO}_2 \times 1,600\text{원}/\text{유로} = 5,161\text{억원}/\text{년}$$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 RPS는 시장원리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원간 경쟁을 바탕으로 하므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 보다 시장경쟁적인 제도임

○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인해 기업투자 및 생산활동은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연관산업의 국내 시장확대, 새로운 고용창출, 부가가치가 높은 원천기술의 연구개발 가속화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규제의 명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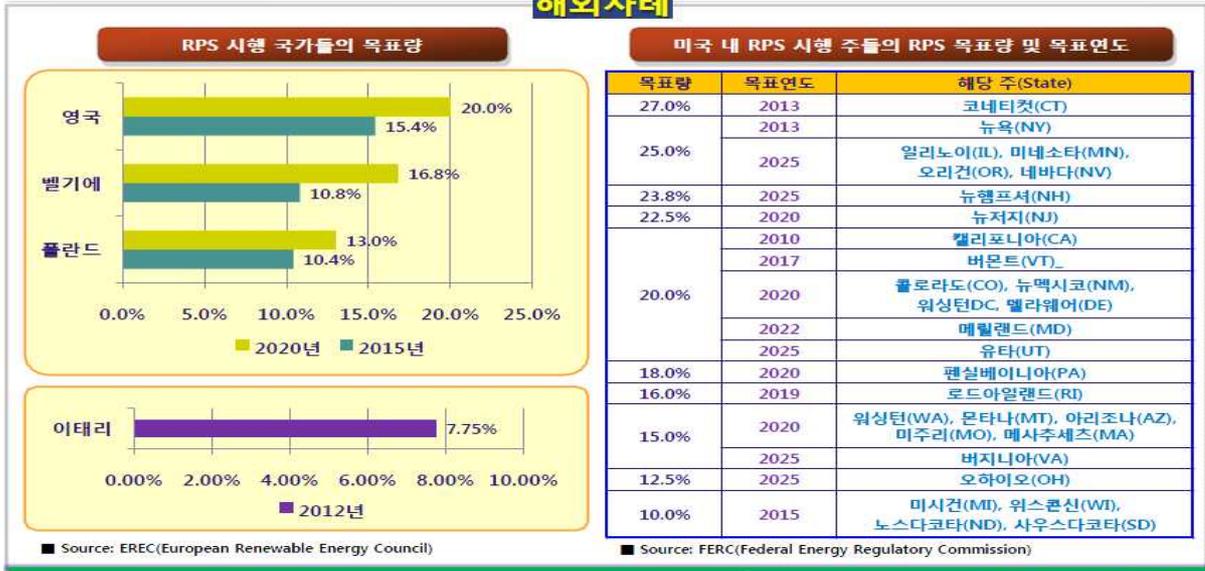
○ 공급의무자 범위 : “50만kW 이상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자’(‘10년 현재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민간발전 사업자 6개사 등 총 14개사가 해당)로 명료하게 규정(시행령안 제16조의2)

○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의 합은 시행령 별표1의3에서 연도별 의무비율을 통해 명확히 규정

< 별표1의3 공급의무자 발전량 합계 중 총의무공급량의 비율 >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해외사례



[RPS 시행방안 공청회]

○ 별도 공급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공급발전량

- 법 제12조의5 제2항 후단(“균형 있는 이용·보급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의무 발전량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에 따라 시행령 제16조의4 제②항의 [별표1의4]에서 해당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태양광으로 규정하고 연도별 공급발전량을 명확히 규정함

<총의무공급량 중 별도로 공급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공급발전량>

1.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 태양광에너지
2. 연도별 공급발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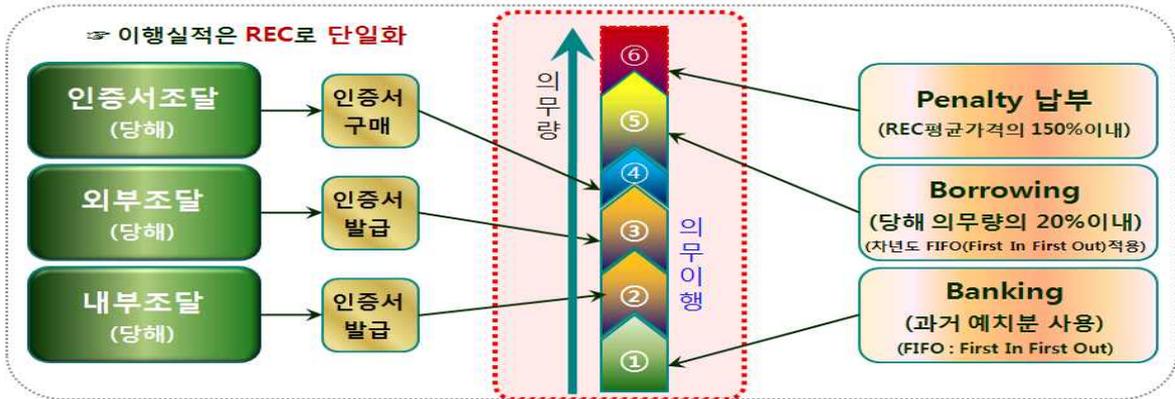
연도	공급발전량 (GWh)
2012	263
2013	552
2014	867
2015	1,209
2016~	1,577

* 태양광 신규설치용량 기준(MW) : ('12) 200 → ('13) 220 → ('14) 240 → ('15) 260 → ('16) 280 [누적 1,200]

○ 제도의 유연성 확보

- 제도의 조기정착과 유연성 확보를 위해 공급의무자는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20%(법 시행일 3년간은 30% 이내)까지를 다음 연도로 이행을 연기가능토록 규정함(Borrowing 방식)

<공급의무량 이행방법>



당해 의무이행의 유예

법 제12조의5 제4항



<공급의무량 유예(Borrowing)방식 해외사례>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이태리
TX	CA				
허용 - 의무량의 5%이내	허용 -3년 -의무량의 25%이내	불허 -미이행분에 대해 Buy-out 가격지 불의무	허용 -연초 3개월 동안 발행된 인증서는 그 전년도의 차입에 적용	허용 -부족분이 의무량의 10%이내면 차입은 가능	허용 -2년 -유예한도는 없음

○ 과징금의 산정방법(시행령 제16조의6)

- 공급인증서의 공급과 수요불균형 등으로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 3개년도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서 가격왜곡현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

- 또한, 과징금 산정시에는 의무공급량을 충족치 못한 사유와 그 부족량, 과징금을 부과 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부과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공급인증서 거래 제한 : 발전소별 설비용량 5천킬로와트를 초과한 수력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 IGCC, 화석연료로부터 부수적으로 얻는 폐가스(부생가스)발전에 대한 공급인증서 거래제한을 명시하여 논란소지를 없앴(시행규칙안 제2조의8)

2) 이해관계자 협의

- '08.4.18 : 관계자 간담회에서 RPS 관련 검토대안 의견 수렴
 - 연구진, RPA 기관 담당자 참석
- '08.6.26 : 유관기관 설명회에서 RPS 제도개요, 설계방안 설명
 - 지경부(담당국장, 유관부서 과장), 에관공, 연구진 참석
- '08.7.29 : RPS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관련 세미나 개최
 - 에관공, RPA 협약기관 담당자 및 과제수행기관 참석
- '08.9.19 : RPS도입 관련 정책과제 발표회의 개최
 - 지경부, 에관공, RPA 협약기관 담당자 참석
- '08.10.15 :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도입 공청회 개최
 - RPA 협약기관, 에너지공기업 및 민간 IPP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학·연구계 등 70여명 참석
- '09.2월 : RPS 세부시행방안 관련, 공급의무자·전기연구원·신재생에너지센터·전력거래소·변호사로 구성된 T/F 구성, 운영
 - 한국전기연구원의 RPS 제도도입을 위한 연구용역과 병행하여 T/F팀 연석회의 수시 개최('09.2~'09.12월간 총 10회 개최)
- '10.3월 ~ 5월
 - RPS제도 시행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법률(안) 국회통과(3.18일)에 따라 이해당사자(공급의무자, 신재생에너지업계 등) 간담회 개최(총 10회)
 - 제도도입과 관련한 정책연구결과 설명을 위한 공청회(3.30) 개최
 - * 공급의무자, 에너지공기업, 민간 IPP 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학·연구계 등 300여명 참석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집행을 위한 예산 및 조직 기 확보

- 1,2차에 걸친 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협약(지경부장관- 한전, 한수원 등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12년부터 RPS 제도의 본격적· 전면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 → RPS제도 도입에 대한 사전준비
 - '09년도 제1차 시범 RPS사업 선정완료 : 태양광발전 분야를 대상으로 제한적 실시
 - 2010.4월 제2차 시범 RPS 사업을 공고('2010. 4. 20)
- RPS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지정과 역할분담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전력거래소에서 RPS 제도 전담팀 조직을 완료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시행을 위한 통합기반시스템 개발” 정책과제(연구수행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연구기간 ; 2009.4 ~ 2011.9, 총사업비 18.3억원)를 추진 중
 - 동 정책연구과제의 중간결과로서 2010년 말까지 RPS제도 운영을 위한 통합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고시 제정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운영규칙 등을 '10년 말까지 완료계획
 - 이를 바탕으로 '11년 한해동안 RPS 제도 모의운영을 실시한 후,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2.1.1일부터 본격 시행계획

<규제영향분석 우수사례(작성예시2)>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122000-가 197-021-00	2. 구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 특송업체의 등록신청 및 통관편의 제한		경제적 규제	○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소관부처 : 관세청 ○ 작 성 자 :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이대복, 특수통관과장 제영광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이종한(경제학 박사)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 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특송업체	35개 업체		서면		이견없음		
	이해관계자	관세사	1,289명*		서면		이견없음		
	관련부처	해당없음							
*) 2008년 12월 31일 현재 한국관세사회 세관별 관세사 현황									
5. 규제존속기한	○ 5년 시행 후 재검토 - 특송물품에 대한 민원서비스 및 대국민 건강보호 등 질적 향상을 위하여 특송업체의 등록요건 등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일정기간 동안 개선안을 우선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규제의 지속적 존속여부를 재검토								

<p>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세관장에 등록의무 ②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고시 제2-2조에 의한 등록의무 위반 시 통관편의 제한 등 ○ 강화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송업체의 등록요건에 자본금 3억원 이상(다만, 자체시설 이용 등록 업체의 경우 5억원)의 법인을 추가 ②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8-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고시 등에 의한 특송업체의 의무사항 위반 시 기존의 '경고처분'을 '반입정지'로 강화
<p>7. 규제체계도</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20px 0;"> <div style="text-align: lef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송업체 등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 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관절차 개시 승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시설이용 통관절차 신청서 </div> <div style="font-size: 2em;">↑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송업체 등록증 교부 ○ 통관절차 개시 승인 </div>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화물운송주선업자 상업서류송달업자</div> </div>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

1) 특송업체 도입 및 운영 배경

- 특송물품을 국내 수취인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통관하여 배송하기 위하여 특송업체(DHL Fedex 등) 제도를 도입
- * 특급특송업체 :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기타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 특급특송물품(특송물품) : 특송업체가 운송하거나 운송주선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

특송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업체수	내 역	
인천공항세관	18	○ 특송업체 자체시설	· 화물터미널 : 6개 · 자유무역지역 : 8개
		○ 세관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 : 4개
김포세관	10	○ 특송업체 자체시설	· 화물청사 : 1
		○ 세관지정장치장	· 지정장치장 : 9
인천세관	6	○ 세관지정장치장	· 세관지정장치장 : 6개
용당세관	1	○ 세관지정장치장	· 세관지정장치장 : 1개
계	35		

- 특송물품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20%내외의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관인력은 정체
- 특송물품은 '07년 기준 727만여건으로 '03년 이후 매년 20%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나 세관인력은 더 이상 증원되지 않아 특송물품 통관관리에 어려움

연도별 특송물품 변화추이

(단위 : 천건)

구 분	'03	'04	'05	'06	'07	'08
건 수	2,955	3,533	4,505	5,901	7,273	8,060
증가율(%)	-	19.5	27.5	30.9	23.2	10.8

- 특송물품은 특성상 door to door 방식으로 신속통관을 하여야 함에 따라 한정된 세관인력으로 세관이 직접 모든 물품에 대해 X-ray검색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에 한계
- WCO Guideline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예에 따라 세관과 특송업체간 MOU체결에 의하여
 - 특송업체가 특송물품 장치 및 검색을 위한 시설·인원 확보, 통관전 세관 정보제공, 자체직원에게 의한 X-ray검색 및 선별 등을 통한 위험도 높은 물품에 대해 자율적인 스크린으로 국내반입을 차단하면
 - 세관은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해 신속통관을 조장('97. 5월부터 시행)하는 특송물품 통관정책 유지
- 그러나 특송업체는 신속통관에만 중점을 둠에 따라, 위험물품 스크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시설·인원 등이 영세화되는 등으로 특송물품의 통관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점 발생
- * 특송업체로 등록을 받아 통관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특송업체에서 자체시설을 갖춘 경우에 자체시설을 이용 통관절차 수행 가능, 다만, 자체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지정장치장을 이용하여 물품통관 반출

2) 최근 문제점 발생

-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건강위해물품 등의 주요 반입루트로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관관리강화 필요성 제기
- 각종 언론에 보도('08년 주요 보도내용)
 - 최근 불경기를 틈타 홍콩의 국가 신인도를 이용하여 가짜 상품을 홍콩 여행객이 현지구매 또는 홍콩여행객이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후에 국내 밀반입하는 사례(KBS 「취재파일 4321」 '08.6.29)
 -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수입금지된 캐나다산 녹용절편, 녹용분말 캡슐이 중국산등으로 둔갑, 품명을 허위(비타민·웃 등)로 하여 특송물품등을 통하여 반입(MBC 불만제로, '08.7.10)
 - "특송우편 구멍뚫린 세관"이라는 MBC 보도에서 시계, 구두 등 짝퉁명품과 최음제 및 건강위해물품이 특송물품을 통해 반입(MBC, '08.10.9)

○ 국정감사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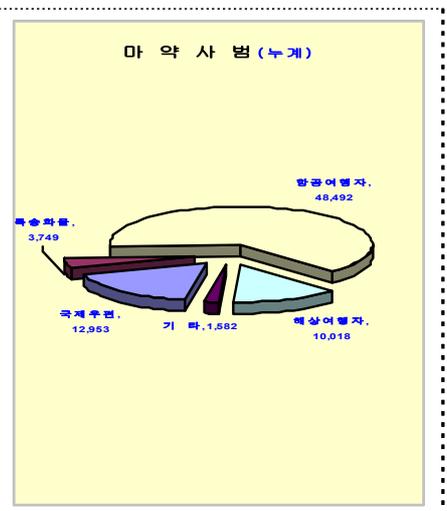
- 관세청은 불법교역물품 반입의 사전차단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
- 최근 유해식품 반입등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관세국경관리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을 통하여 불법물품이 반입되고 있어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통관의 신속성 측면보다는 국민들의 건강 또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국경 관리 강화 필요

* 국정감사시 지적('08.10.13) : 서병수, 박병석, 나성린, 강운태, 이해훈, 김효석, 백재현, 강길부 의원(8명)

○ 마약 적발실적

(백만원)

구 분	'07년도		'08년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항공여행자	15	4,768	25	48,492
국제우편	115	12,293	99	12,953
해상여행자	27	26,704	13	10,018
특송화물	20	2,121	13	3,749
기 타	7	6,872	11	1,582
합 계	184	52,758	161	76,794



* '08년도 특송화물 통해 반입된 마약 적발실적은 13건 3,749백만원을 적발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특송물품 규제강화 필요성

○ 특송업체의 특송물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마련 필요

- 특송물품을 운송·장치·통관 및 배송하는 특송업체는 일정규모의 자격요건 및 시설·인력 등을 구비하여 최소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

<특송물품과 일반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비교표>

- 일반수입물품 : 화물도착 → 화물반입(보세창고) → 수입신고(화주 또는 관세사) → 수입신고수리 → 화물반출
- 특송물품 : 화물도착 → 화물반입(특송업체 자체창고 또는 세관지정장치장) → 수입신고(화주 또는 관세사, 목록통관의 경우 특송업체) → 수입신고수리 - 화물반출

-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에서 ① 외국에서 특송물품을 수취하여 국내까지 운송하여 ② 동 업체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화물을 반입한 후 ③ 동 업체에서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한 후 ④ 수취인에게 배달

* : 세관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송업체가 시설·장비·인력등을 갖춘 경우 자체시설 이용

** :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 제출하고,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이나 물품가격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사에서 간이신고 또는 정식수입신고

※ 일반수입물품은 특송업체가 아닌 화주 또는 관세사등이 수입신고

- 자체시설이용업체에 대한 특송업체의 책임

·특송업체는 특송물품 통관을 위해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의 세관지정 장치장에 반입하여 통관하는 것이 원칙

·특송업체는 특송물품을 외국에서 수취하여 국내까지 운송, 동 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체창고에 반입한 후 통관까지 처리

·다만, 특송업체가 세관지정장치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보세창고(일명 통관장)를 확보하고, 특송물품의 통관·특송물품 관리·통제·보안 등 자체시설(X-ray 검색기, X-ray 판독 요원 등) 구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절차 수행

- ⇒ 일정 규모 및 시설등을 갖춘 운송업체를 특송업체로 지정하여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 지재권침해물품 및 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사전 반입 차단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일반 수입물품은 제3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세관직원 또는 전문 화물관리인인 보세사에 의하여 엄격하게 화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 통관은 화주 또는 전문 통관자격사인 관세사에 의하여 통관절차가 수행되고 있음
- 이에 반하여 특송물품은 특송업체에서 관리하는 자체시설창고에 특송물품을 반입하여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고 특송업체 판독 직원에 의한 X-ray 검색과정을 거치고 반출함에 따라 일반화물에 비하여 화물관리가 느슨하고 특송업체의 통관절차 수행에 따른 불법물품 반출 개연성 높음

* : 물품가격 미화 100불 이하인 물품은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을 제출하고 X-ray 검사 후 물품 반출

- 특송물품은 화물관리가 특송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고 자본력 및 자체시설이 영세한 특송업체의 경우 화물관리보다는 업체의 이익을 위한 신속통관에만 치중함에 따라 화주 또는 전자상거래업체 등과의 유착가능성 및 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반입될 개연성이 높음

* "특송우편 구멍뚫린 세관"이라는 MBC 보도에서 특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유착가능성 지적(MBC, '08.10.9)

- 특송물품을 통하여 불법물품의 반입차단 등 화물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특송업체에 대한 규제강화[일정규모(자본금 3억원,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자격요건 등] 불가피

* WCO Guideline 및 미국 CFR에도 규정

□ 해외사례

「탁송품 즉시반출을 위한 WCO Guideline」

9. 간편·신속한 탁송품 즉시 반출/통관을 위한 정보 및 서류제출요구
- 특송업체는 세관에 탁송품의 선적 또는 도착을 사전통지하도록 권장
 - 사전통지는 전자적 또는 서류형태의 적하목록, 화물신고서 또는 약식 신고 서식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세관에서 필요한 정보가 포함 되어야 함
16. 세관과 특송업체간 협력 협정 또는 조정
- 세관과 특송업체는 특히 다음 사항을 국가 또는 지역수준의 협정 (MOU체결 권장)
 - (a) 특송업체와 세관간의 전반적 책임 규정
 - (b) 탁송품의 반출/통관을 승인받기 위한 모든 형식의 세관신고서에 대한 구속력 규정
 - (c) 탁송품 반출/통관을 위해 지정된 구역 또는 장소의 안전 유지를 위한 세관과 특송업체 간의 협력 규정
 - (d) 마약밀수, 부정무역,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의 반입방지 협력 규정
 - (e) 특송업체가 금융담보 제공, 사전정보 또는 서류 제출과 같은 세관의 관련요구에 부응할 경우에는 세관의 간편하고 신속한 탁송품 반출/통관절차 인정
 - (f) 가격, 물품, 송하인 및 수하인과 같은 세부사항을 충분히 입증하고, 세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종이 또는 전자 서류의 확인
 - (g) 탁송품의 반출/통관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의 작업을 위한 건물 및 시설 등의 세관 제공 명확화
 - (h) 협정을 수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즉시 통지 규정
- 【주】 국내법은 그러한 협정을 법률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규정

* 통관방법(WCO Guideline) : ①서신류 ②저가 비과세 ③저가 과세 ④고가 과세

○ 미국 CFR 규정

- 미국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색기, 자동분류시스템 등 창고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door to door 방식에 의한 일괄운송 방식으로 엄격한 특송화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현행 특송업체의 경우에는 설비가 미비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면이 있음

【CFR(미국 CBP 특송규정) §128.11】

○ 특송업체나 통관장 시설에 대한 승인신청시 주요내용

1. 설계도, 평면도 및 시설 위치를 포함한 화물시설들에 대한 전체 기술서
2. 특송업체의 시설을 사용할 모든 운송업체나 특송업 운영에 대한 일반 현황 명세서
3. 예상 반입규모
4. 회사의 주요 임원 및 직원 목록
5. 계획된 업무 개시일, 영업시간과 날짜
6.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상세내역에 기재된 대로 적절한 사무공간, 장비, 가구, 물품과 안전을 제공

* 통관방법(CFR §128.24) : 목록통관(200불 이하), 간이신고(informal, 2,000불 이하), 정식수입신고(formal, 2,000불 초과)

< 화물관리를 강화하는 최근 국가의 추세 >

○ 국제 수출입물류 패러다임 변환

“신속과 정확” ⇒ “안전(safety and security)”

-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수출입물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안전협정(CSI), C-TPAT* 등 강력한 제도를 도입·시행
- WCO도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표준틀(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을 총회에서 승인('05.6)

*C-TPAT :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대테러 민관파트너십)

○ 국가간 교역량 증가에 따른 위험가능성의 증가

- FTA체결과 같은 자유무역 확대로 국가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테러물품, 건강위해물품, 밀수 등 위험요소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

○ 수출입물류 안전에 있어 민·관 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

- 수출입물류공급망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특송업체의 자본금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영세한 업체들이 특송물품을 취급함에 따라 마약, 건강위해물품 등 불법물품이 반입될 개연성이 높아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특송업체의 등록제도의 강화는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시장경쟁제한의 성격이 있으나
 - 특송업체는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상업서류 또는 견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특송업체는 수입물품의 신속한 운송(EMS) 및 통관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송업체 제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갖춘 특송업체로 통제할 필요가 있음
 - *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03.1.23일 제정·시행하여 왔으며, 현행 영업중인 특송업체는 총 35개 업체임

○ 대안검토

구분	장점	단점
1안 자본금 -세관지정장치장(3억원) -자체시설(3억원)	○ 특송화물의 안전관리 및 민원인 서비스 질 향상	○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2안 자본금 -세관지정장치장(3억원) -자체시설(5억원)	○ 자본금이 충실한 특송업체에 의한 특송화물의 안전관리 및 민원인의 서비스 질 향상	○ 자본금 규정 제1안보다 과도하게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3안 자본금 -세관지정장치장(5억원) -자체시설(5억원)	○ 자본금이 충실한 특송업체에 의한 특송화물의 안전관리 및 민원인의 서비스 질 향상	○ 자본금 규정 제1안 및 제2안보다 과도하게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4안 자본금 요건 없이 허용	○ 시장경쟁을 통해 시장 효율성 확보	○ 특송업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근간에 영향 ○ 특송화물의 무리한 유치경쟁에 의한 불법물품 반입 우려

- 특송업체의 진입장벽의 제거를 통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는 제4안)이 적합하나, 특송화물을 통한 국민건강,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특송업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세관지정장치장을 이용하여 특송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자본금을 3억원으로 하고, 자체시설을 갖추고 특송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5억원으로 하는 제2안)이 적절함
- 기타 규제방식, 중소기업 영향분석 등은 동 규제와 관계가 없어 기술 생략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의 비용분석

(1) 규제의 사회적 비용항목 식별

-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비용부담 그룹 식별
 - 규제강화로 피규제집단인 특송업체의 규제준수비용
 - 규제집행당국의 규제감독비용
- 특송업체의 규제준수비용은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 규제집행당국의 추가적인 규제감독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특송업체의 규제준수 비용

- 특송업체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비용분석
 - 현행 규정상 특송업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무역선을 이용하는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필한자로, 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자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영업 중인 35개 특송업체에 대한 자본금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체업체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중 23개 업체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 세관지정장치장을 이용하는 특송업체(20개)는 모두 3억원 이상, 자체시설을 이용하는 특송업체(15개)는 모두 5억원 이상으로 제2안)에 의한 자본금 규정을 두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음.

특송업체 자본금 현황

자본금	업체수	비고
3억원-4억원	12	35개 특송업체 모두 자본금 3억원 이상임
5억원-7억원	12	
8억원 이상	11	
계	35	

- 위에서 설명한 규제강화를 전면 시행할 경우
 - 분석의 편의를 위해 시장에 새로운 진입업체가 없는 것으로 가정
 - 현재 35개의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이 5억원 미만, 나머지 23개의 업체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음.
 - 할인율은 피규제집단이 민간 화물운송업체이기 때문에 회사채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금리 상승시기인 2007년과 2008년 평균 금리 6.68%에 근거해 평상시 회사채 금리는 평균 6.5%에서 변동할 것으로 가정

최근 회사채 금리 변화 추이

회사채금리 (무담보AA-)	2007	2008	평균
최고가	6.81	8.91	
최저가	5.17	5.84	
평균	5.99	7.38	6.68

제1안 :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경우(요건신설)

- 35개 업체의 자본금이 모두 3억원 이상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제2안 : 자본금 3억원 이상인 경우(요건신설)

* 자체시설 이용 특송업체는 5억원

- 35개 특송업체의 자본금은 모두 3억원 이상이며, 이 중 자체시설 이용 15개 특송업체의 자본금은 모두 5억원 이상임
- 따라서, 제2안에 의한 자본금 요건 강화는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제3안 : 자본금 5억원 이상인 경우(요건신설)

- 35개 업체 중 자본금 3억원인 업체가 11개, 4억원인 업체가 1개이고 나머지 23개의 업체는 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상태
 - 11개의 업체에 각 2억원, 1개의 업체에 1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므로

총 23억원 = 업체 수(11개) * 자본금(2억) + 업체 수(1개) * 자본금(1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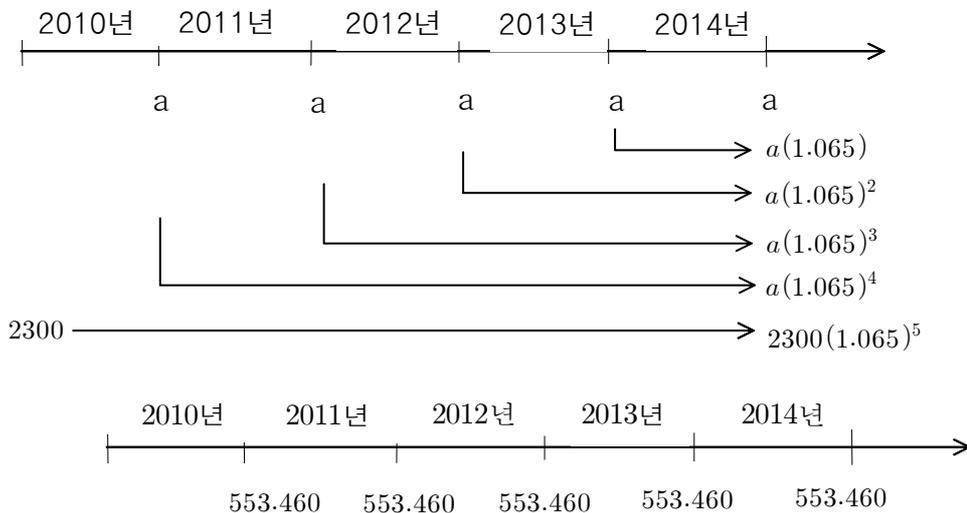
자본금	업체 수	업체별 추가비용	추가비용	비고
3억원	11	2억	22억	35개 특송업체중 24개의 업체가 자본금 5억원 이상임.
4억원	1	1억	1억	
5억원이상	23			
계	35		23억	

- 5년만기 매년말 원리금 균등상환을 가정
- 이자율 = 할인율 = 회사채 금리 = 6.5% 가정
- 매년 갚아야 할 일정한 원리금을 a 라 두면, a 는

$a(1 + (1.065) + (1.065)^2 + (1.065)^3 + (1.065)^4) = 2300(1.065)^5$ 식을 만족시켜야 함

$$a \cdot \frac{(1.065)^5 - 1}{0.065} = 2300(1.065)^5$$

따라서 $a = \frac{(0.065)(2300)(1.065)^5}{1.065^5 - 1} = 553.460$ (백만원) 이 균등 상환해야 할 금액



전면적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2013년 말	2014년 말
원리금 균등상환액	553.460	553.460	553.460	553.460	553.460
원금	2300	1896.041	1465.824	1007.643	519.680
이자비용	149.500	123.243	95.279	65.497	33.779
원금상환액(원리금-이자비용)	403.959	430.217	458.181	487.963	519.680
이자비용 현재가치	140.376	108.658	78.876	50.912	24.655
이자비용 현재가치 합계	403.477				
원금+이자비용	2703.477				

* 이자율=할인율= 6.5%
 이자비용= ∑각 업체별 이자비용

- 규제를 일시에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제 1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특송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의 현재가치는 403백만원으로 추정됨. 따라서, 원금 + 이자비용 = 2,703백만원임.

제4안 : 자본금 요건없이 허용

- 추가비용 없음.

2) 규제의 편익 분석

(1) 규제의 사회적 편익항목 식별

-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유형
 - 일정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특송업체가 특송화물 운송 및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불법물품 사전 예방관리 효율성 증대
 - 마약, 짝퉁 및 건강위해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 사전 차단으로 국민 건강 및 사회안전보호로 사회적비용 절감
- * 마약류(메스암페타민) 1kg 국내반입시 예상비용 : 약 33억원(형사정책연구원)
 - 특송물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 및 관리강화로 대민서비스 질 향상 및 편익 도모
- 이상의 유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계량화가 가능한 사회적 편익은 마약, 짝퉁 및 건강위해물품의 불법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절감
 - 불법 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암시장을 형성하며 공식적인 GDP 등 경제적 편익으로 잡히지 않으며 합법적인 거래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규제강화로 감소한 불법 거래규모를 사회적 편익으로 추정

(2) 규제강화로 감소된 불법 특송화물 거래규모

-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 무역거래의 감소 규모로 파악
 - 특송화물에 대한 규제강화는 특송업체에 대한 규제강화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로 이루어지지만, 이러한 규제강화로 인한 불법 무역거래의 감소를 특송업체의 규제강화에 기인한 부분과 전자상거래업체의 규제강화에 기인하는 부분으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적 편익규모를 산출
 - 따라서 순편익을 계산할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합하여 순편익을 계산해야 함

<불법 무역거래 현황>

- 2008년도 밀수·부정무역사범, 마약·외환사범 등 불법무역사범* 단속실적이 5,925건, 5조 3,504억원에 달함 (2009년 2월 9일 관세청 자료)

* 불법무역사범 : 밀수(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지적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마약사범, 외환사범을 총칭

유형별 단속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07년		2008년		전년대비증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사범	2,849	770,638	2,437	650,148	△14	△16
부정무역사범	1,273	1,267,343	1,031	1,254,287	△19	△1
마약사범	210	52,811	169	76,824	△20	45
소계	4,332	2,090,792	3,637	1,981,259	△16	△5
불법외환거래사범	2,364	2,389,810	2,288	3,369,167	△3	41
합계	6,696	4,480,602	5,925	5,350,426	△12	19

주) ① 부정무역사범 : 대외무역사범, 지식재산권사범(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사범)
 ② 불법외환거래사범 : 외환사범, 재산국외도피사범, 자금세탁사범

- 이러한 불법 무역사범 유형들이 모두 특송화물을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 중 특송화물과 관련된 유형은 부정무역사범 중 지적재산권사범과 마약사범 등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불법 무역사범 규모 중에서 지적재산권사범과 마약사범이 차지하는 규모를 구하고 이들 중 수입비율과 특송화물 이용비율을 추정하여 특송화물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한 불법무역 규모 감소분을 추정하고자 함

$$\text{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 = (\text{지적재산권사범} + \text{마약사범}) * \text{수입율} * \text{특송화물이용율}$$

<특송화물 이용율 추정>

- 특송화물 이용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마약사범 단속실적 중 특송화물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특송화물 이용율을 3개년 평균값인 4.28%로 설정

마약사범 단속실적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평균
총 금액	43,236	52,811	76,824	57,623.67
특송화물(금액)	1,701	2,121	3,749	2,523.67
특송화물(건수)	36	20	13	23.00
특송화물의 차지비율	3.93%	4.02%	4.88%	4.28%

<불법 수입율 추정>

- 불법 무역거래에서 수입부분만 고려하기 위해 불법 수출부분은 제외
 - 밀수입과 밀수출 규모를 알 수 있는 관세청의 밀수사범 단속실적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관세사범, 부정무역사범(대외무역사범, 지적재산권사범), 마약사범 등을 포함한 불법무역 중 밀수입 비율은 91.7%, 2008년은 72.1%로 상당한 편차가 존재
 - 불법 수입률을 추정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평균 밀수입 비율인 84.3%를 적용

관세, 부정무역, 마약사범 단속실적

(단위: 억, 백만원)

	2004	2005	2006(상반기)	2007	2008	평균
밀수입	12,568	10,491	10,168	1,917,642	1,427,683	675,710
밀수출	1,041	1,736	2,633	173,150	553,576	146,427
합계	13,609	12,227	12,801	2,090,792	1,981,259	822,138
밀수입 비율	92.4%	85.8%	79.4%	91.7%	72.1%	84.3%

참고) 2004, 2005, 2006년 (단위: 억원); 2007, 2008년 (단위: 백만원)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불법 특송화물 거래 감소) 추정>

- 이상의 밀수율과 특송화물 비율을 이용하여 특송을 이용한 지적재산권사범 및 마약사범의 밀수 규모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특송화물 이용한 지적재산권 및 마약사범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년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평균
지적재산권사범	합계	490,101	210,566	159,329	2,666,813	680,308	934,422	856,923
	밀수	413,155.1	177,507.1	134,314.3	2,248,123.4	573,499.6	787,717.7	722,386
	특송화물	17,683.0	7,597.3	5,748.7	96,219.7	24,545.8	33,714.3	30,918
마약사범	합계	184,770	27,983	34,428	43,236	52,811	76,824	70,009
	특송화물	7,908	1,198	1,474	1,701	2,121	3,749	3,025
특송화물	합계	25,591.0	8,795.3	7,222.7	97,920.7	26,666.8	37,463.3	33,943

- 위의 표를 보면 지적재산권 사범이나 마약사범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6개년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규제강화로 인해 불법무역 감소규모를 추정
 -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가에 따라 사회적 편익의 크기는 달라짐
 - 특송화물 밀수 규모가 1% 감소할 경우와 5%, 10%, 15%로 각각 나누어 향후 10년간 발생할 사회적 편익의 현재가치를 추정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편익(특송화물 밀수 감소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불법특송규모	규제효과 1%	1%현재가치	규제효과 5%	5%현재가치
2010	33,943	339.43	318.7	1,697	1,593.6
2011	33,943	339.43	299.3	1,697	1,496.3
2012	33,943	339.43	281.0	1,697	1,405.0
2013	33,943	339.43	263.8	1,697	1,319.2
2014	33,943	339.43	247.7	1,697	1,238.7
2015	33,943	339.43	232.6	1,697	1,163.1
2016	33,943	339.43	218.4	1,697	1,092.1
2017	33,943	339.43	205.1	1,697	1,025.5
2018	33,943	339.43	192.6	1,697	962.9
2019	33,943	339.43	180.8	1,697	904.1
합계	339,430	3,394	2,440	16,972	12,201

연도	불법특송규모	규제효과 10%	10%현재가치	규제효과 15%	15%현재가치
2010	33,943	3,394	3,187.1	5,091	4,780.7
2011	33,943	3,394	2,992.6	5,091	4,488.9
2012	33,943	3,394	2,810.0	5,091	4,215.0
2013	33,943	3,394	2,638.5	5,091	3,957.7
2014	33,943	3,394	2,477.4	5,091	3,716.2
2015	33,943	3,394	2,326.2	5,091	3,489.3
2016	33,943	3,394	2,184.3	5,091	3,276.4
2017	33,943	3,394	2,050.9	5,091	3,076.4
2018	33,943	3,394	1,925.8	5,091	2,888.7
2019	33,943	3,394	1,808.2	5,091	2,712.3
합계	339,430	33,943	24,401	50,915	36,602

- 위의 표를 보면 규제강화에 따른 효과가 특송을 이용한 밀수규모를 1% 감소시킬 경우 향후 10년간 발생할 사회적 편익의 현재가치는 24억 4천만원, 5%감소시킬 경우 122억 1백만원, 10%감소시킬 경우 244억 1백만원, 15% 감소시킬 경우 366억 2백만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3) 규제의 비용과 편익비교

- 전자상거래업체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특송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송업체 자격요건 규정 신설에 따른 비용만 고려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사회적 순편익 발생[고시개정(안) : 제2안]
- 규제효과가 미미한 경우에도 순편익 발생
- 규제의 실효성과 상관없이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BC ration > 1, NPV > 0)
- 제3안의 경우에도 규제의 실효성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확보된다면 규제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BC ration > 1, NPV > 0)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

(단위: 백만원)

구분	사회적 편익	자본금 강화로 인한 비용			요건 비용			B/C ratio			NPV(순편익)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1안	2안	3안
규제 효과 1%	2,440	0	0	2,703	∞(무한대)	∞(무한대)	0.9027	2,440	2,440	-263			
규제 효과 5%	12,201	0	0	2,703	∞(무한대)	∞(무한대)	4.5139	12,201	12,201	9,498			
규제 효과 10%	24,401	0	0	2,703	∞(무한대)	∞(무한대)	9.0274	24,401	24,401	21,698			
규제 효과 15%	36,602	0	0	2,703	∞(무한대)	∞(무한대)	13.5413	36,602	36,602	33,899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WCO Guidline에 따라 세관과 특송업체간 MOU체결에 의하여
 -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장치 및 검색을 위한 시설·인원 확보, 통관전 세관정보 제공, 자체직원에 의한 X-ray 검색 및 선별등을 통한 위험도 높은 물품에 대해 자율적인 스크린체제를 구축하여 불법물품 차단 등 화물의 안전관리를 기하는 경우 신속통관 보장('97.5월)
 - 그러나, 시설·규모 등이 영세한 특송업체는 특송화물의 무리한 유치 경쟁으로 불법물품 반입 등 통관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동 규제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규제임
- 주요국의 물류보안 강화
 - ① 미국 :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대테러 민관파트너십)
 - 수출국 → 미국에 이르는 Supply chain상의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민공동의 자율적인 조치로서 2002년 4월 법적근거 없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으나, 2006년에 제정된 Safe Port Act에 의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대상사업자 : 선사, 항공사, 트럭운송업자, 통관업자, 포워드, 수입업체, 로지스틱스사업자 등 수입과 관련된 모든 국제물류기업
 - 요건(보안기준) : 관련시설에 대한 불법침입대책, 종업원 채용에 관한 심사, IT 보안 확보, 화물의 운송·취급·장치 관련 절차상의 안전성 확보 등
 - ② WCO : SAFE Framework
- 국제무역의 안전확보 및 원활화를 위한 WCO 기준 Frame 제정

- 통칭 SAFE Framework(Security and Facilitation in a Global Environment(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로 불리는 이 기준은 국제무역의 안전확보와 원활화를 양립시키기 위해 각국 세관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기준(세관절차)으로서 세관간의 협력, 세관과 민간의 협력관계를 규정
- 이 기준은 2001년 테러 이후의 검토·논의결과를 종합하여 2005년 6월 총회에서 채택

③ EU

- 법령 준수에 우량하다고 인정된 역내 물류관련사업자에게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2005년 EC 관세법 개정, 2008년 1월부터 순차 적용)
- 대상사업자 : 수출입에 관련된 역내의 모든 물류기업
- 요건 : ① 과거 3년간 세관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 ② 충분한 자금력, ③ IT 보안 확보, ④ 물류관리·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 등

3-2. 이해관계자 협의

-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류, 짝통물품 및 건강위해물품이 반입된다는 '08년도 우리청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및 각종 언론보도에 따라 동 규제에 대하여 특송업체 및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공감
- express & cargo Times 주요보도에 의하면 국제특송이 짝통과 탈세 분할통관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고, 일부 특송업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

<express & cargo Times 보도 및 협의실시 참고자료>

□ '08.10월호 express & cargo Times 주요보도 내용

- 지난 10월초 방송 및 국정감사로 인해 특송통관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은 어쩔 수 없이 예정된 내용이라고 업계는 내다봤다.
- 이미 국제특송이 짝통과 탈세 분할통관의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특송업체들은 이번 사건이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다.... “수입전자상거래 특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특송물품 및 전자상거래물품관련 고시 개정(안)에 대한 업체 의견조회 ('09.1.15)

○ 건의업체 : DHL, UPS, Fedex

○ 주요내용

- X-ray동시구현 시스템 구입에 필요한 비용 총당 하여 보급(DHL, UPS, Fedex)
- 관세청 주관교육이외에 항공보안교육도 인정(DHL)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특송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특송업체 등록을 관할지세관장 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관할지세관장등은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특송업체로 등록

○ 따라서, 규제를 집행·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규제영향분석 우수사례(작성예시3)>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14970			
	규제사무명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직권지정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경제적규제/진입	유형/구분	지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제안부처	농림수산식품부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처리기관	중앙/지방자치단체	
	작성자 인적사항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 강동양			
4. 근거법령명 등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선에 허가받은 구획어업 허가 처분을 받은 자	11,131명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 때 단체 대표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정부 직권 구조조정은 충분한 보상과 선주 및 어선원들의 생계지원 등 정부지원금 현실화 필요
	이해관계자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어선에 허가받은 구획어업 허가 처분을 받은 자	11,131명	공청회,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 때 단체 대표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 ○ 정부 직권 구조조정은 충분한 보상과 선주 및 어선원들의 생계지원 등 정부지원금 현실화 필요
	관련부처	정양부처	기획쟁정부 외 39개 부처	관계부처 협의	○ 특이사항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준수가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강화)규제내용 ○ 어업자 단체가 법률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구조조정 대상어업의 자율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률안 제5조의 어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어업구조개선이 필요한 어업에 대하여 직권으로 구조개선 대상어업을 지정할 수 있음 				
8. 규제체계도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94년이후 현재까지 약 17년간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연근해어업은 경쟁 조업, 자원감소, 경비과다지출 등 악순환으로 어업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구조
 - 감척사업도 어업자 희망에만 의존하여 추진한 결과 당초 사업목표 달성에 미달
 - 특히, 어획강도가 높아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은 감척이 부진한 반면, 어획강도가 낮은 연안어업 및 노후어선위주의 감척사업으로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한 어업구조의 근본적 개편에는 미흡한 실정
- ※ '94이후 감척결과 : 14,711억원 투입, 연근해어선 15,399척 감척
 - 어획강도 높아 감척이 필요한 동해구기저, 동해구트롤, 서남구기저, 대형트롤어업등 끌그물어업은 대부분 감척사업을 희망하지 않아 어업구조 불균형 초래
- 또한, 최근의 국내외 어업여건(해양환경 변화, FTA 확산 추세 등)은 우리나라 어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요구
 -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 한·EU, 한·미, 한·중 FTA 추진 등은 장래 수산업구조의 혁신을 요구
- 따라서 정부는 향후 10년간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을 통하여 어업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
 - 감척위주의 구조조정을 업종의 통폐합, 어선의 적정경영규모 전환 등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고, 감척사업도 어업자 희망과 필요시 장관, 시·도지사의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어업구조의 선진화 도모 필요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어업구조조정 측면

- '94년이후 어선감척사업 추진으로 연근해 어선세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용역 결과, 어업자원량에 비해 아직도 20.7%가 과도한 실정('09년말 기준)

<어업자원량대비 어업구조조정 대상 어선세력>

구 분	허가처분 건수('09)	목표건수	초과건수	
			건수	비율(%)
합 계	64,792	53,661	11,131	20.7
연안어업	61,388	51,706	9,682	18.7
근해어업	3,404	1,955	1,449	74.1

* 연구용역 : 연안어선('10. 군산대), 근해어선('07. 전남대)

- 특히,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감척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어업자 희망에 의한 감척만으로 동해구기저어업, 동해구트롤어업 등 12개 업종은 허가정수대비 90~34%를 초과하는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구조조정은 상당량 미흡한 실정

<2009년도 어업허가정수 대비 30% 초과 업종(11종)>

어업의 종류	허가정수 (A)	'09년말 허가처분(B)	정리대상 (C=B-A)	비율 (C/A*100)
동해구기저	20	38	18	90.0
연안통발	4,680	7,946	3,266	69.8
장어통발	40	65	25	62.5
동해구트롤	23	37	14	60.9
서남구(외)	29	43	14	48.3
기타통발	159	225	66	41.5
대형트롤	37	52	15	40.5
패류형망	72	101	29	40.3
대형기저(외)	34	46	12	35.3
잠수기	175	236	61	34.9
소형선망	35	47	12	34.3

- 그동안 정부는 감척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폐업지원금의 상향조정(50%→80%), 참여선박의 선령기준 완화(10→6년), 무조업선 참여기회 부여 등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현행 구조조정사업이 어업자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어업여건*에 따라 사업의 참여 또는 미참여를 결정하는 등으로 사업 추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 * 어업인들은 유가변동, 어획상황 등 경영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관계어업인 및 지자체의 의견, 어업인 위주로 구성된 중앙 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획강도가 높아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을 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 사업추진 필요
- 또한 동 제도의 도입은 대다수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업자 단체에서도 중장기 어업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공감하고 있으며, 다만, 감척사업비중 폐업지원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 ※ 현행 감척사업 지원금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100%)+폐업지원금
 - 폐업지원금: 어업 평균수익액의 3년분(연안 100%, 근해 80%이내에서 최저 입찰제)

□ 외국의 정부 지정감척 사례

- 어선감척사업은 어업능력을 감축하여 자원지속성 유지와 어업수익을 증가시키는 ‘윈-윈’ 효과를 거두고자하는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추진 중인 정책임
 - * 2003년도 OECD국가들이 어선감척사업에 430백만 USD를 투입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기준 총 정부재정이전(GFT: government financial transfer: 정부보조금)의 7%에 해당
- 미국
 -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 베링해 명태어업(Bering Sea Pollock Fishery)에 대한 어선감척사업은 1998년 당시 미국 어업법(American Fisheries Act) 하에서 시작됨. 동법에서는 NMFS(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로 하여금 30척의 공모식 트롤어선 중 9척을 감척하도록 하였음.
 -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된 뉴잉글랜드 저서어업(New England Groundfish Fishery)에 대한 어선감척사업은 1994년 긴급보완조치법(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 Act) 하에서 1995년 6월과 1998년 5월 사이에 걸쳐 정부주도로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NMFS 79척의 어선과 허가권을 총 24.4백만 달러를 사용하여 감척하였음

◦ 대 만

- 당초 자율적 신청에 의한 어업구조조정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어업인이 정부의 매입에 응하지 않고 시기 관망 등 사업부족 등의 부작용으로 강제적 감척제도 도입
- 2005. 2월 대만어업위원회는 두 단계(2005년과 2006년) 160척의 대규모 참치연승 어선을 의무적 감척으로 사업추진
 - * 1단계 59척을 2단계 101척을 폐선하고, 어업허가 취소

◦ 노르웨이

- 1979년부터 어선감척사업들은 다양한 기간 동안 다양한 업종별 어선들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의 회복을 통한 수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추진
- 감척사업은 대부분 규모가 큰 대형선망어업과 트롤어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m 이하인 소규모 어선으로 확대
- 어업허가의 매입비 등은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시행하고, 감척으로 수거한 어선은 폐선 등의 방식으로 재진입 차단

□ 기타 국회 및 어업인 요구사항

◦ 국회 농림수산위원회('10.10.22 국정감사시 지적)

- 어획강도가 낮은 업종의 감척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수산자원의 고갈 우려가 큰 저인망, 트롤어선 등 향후 개방경제시대에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등은 정부가 폐업지원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여 감척 조치하는 등 강력한 어업구조개선 대책 강구 필요

※ 2007 ~ 2009년까지 실집행률 44.7%에 불과

◦ 대부분의 어업인들도, 향후 어업구조의 개선없이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 FTA 확산에 따른 수입수산물 급증 등으로 어업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 구조 개편 요구

- 특히, 한·중 FTA 추진은 우리 연근해어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큰 문제로 정부의 충분한 사전대책 요구

※ 최근 3년 평균 중국 수입수산물 현황

- 전체 수입 수산물의 32.5% 차지(평균관세 17.7%, 연간 평균 981백만\$)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결과, '10.6」 분석대상 95개 품목중 74개(78%) 수산물이 한국보다 중국이 우위로 판단, 특히 냉동 넙치류, 날개다랑어, 게, 새우, 대하 등은 한국보다 높은 가격경쟁력 보유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현행 어업인 단체의 자발적 참여(희망 감척) 방식과 정부 및 시·도의 지정 감척방식을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안 없음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는 「헌법」 제12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또는 어업조정 기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과하진 어업의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특정인에게 법률로 해제한 것으로, 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 만료 시 어업허가 정수의 삭감 등을 통해 어업허가를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어업인의 지속적 생계유지곤란 등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94년이후 감척사업을 통해 적절한 지원으로 일정부분의 어업허가를 회수하는 정책을 추진
- ※ 헌법 제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 수산업법 제11조(면허의 금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제34조제1항제1호1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업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9조로 허가어업에 준용)
- ※ 수산업법 제34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최근 3년간의 감척사업 투자효과 분석결과('09 연구결과)를 토대로 '10년기준 14년까지 감척예산(비용) 2,687억원을 투입할 경우 7,670억원의 감척효과(편익)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구분	감척계획		감척이후 어선척수	감척편익* 척당어획량	감척편익 총어획량	생산량당* 생산금액 (천원/MT)	감척효과 어획량 (억원)	
	척수	금액(억원)						
합 계	2010	1,173	775	52,626		58,503	1,574	
	2011	684	412	51,942		57,970	1,558	
	2012	650	500	51,292		57,084	1,535	
	2013	650	500	50,642		56,198	1,513	
	2014	650	500	49,992		55,312	1,490	
	계	3,807	2,687	-		285,067	7,670	
근 해	2010	78	228	2,969	12.68	37,647	2,035	766
	2011	20	80	2,949		37,393		761
	2012	50	200	2,899		36,759		748
	2013	50	200	2,849		36,125		735
	2014	50	200	2,799		35,491		722
	소계	248	908	-		183,415		3,732
연 안	2010	1,095	547	49,657	0.42	20,856	3,874	808
	2011	664	332	48,993		20,577		797
	2012	600	300	48,393		20,325		787
	2013	600	300	47,793		20,073		778
	2014	600	300	47,193		19,821		768
	소계	3,559	1,779	-		101,652		3,938

- * 최근 3년간(2007~2009년) 평균 감척편익 척당어획량 및 생산어획량당 평균 생산금액을 적용
- * '09년도 연근해어선세력(53,799척)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감척계획물량만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연감소분은 고려하지 않음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어업구조개선 대상어업의 지정은 미리 해당 어업자 단체에게 어업구조개선계획을 요청하고, 해당 어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어업경영실태 조사결과와 지자체, 어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및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절차가 적정함
 - 또한, 동 법률이 정한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대상 어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법안 제11조)

※ 참고사항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허가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보상 (간척·매립 등 우리나라 모든 공익사업)
 -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토지, 물건 및 권리(허가어업을 포함함)]을 보상주체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허가어업에 대한 손실액 보상은 동법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규정
 - * 허가어업이 취소된 경우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감정평가액) + 평년수익액의 3년분

2) 이해관계자 협의

- 관련 어업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공청회, 7.27)

제출의견	검 토 의 견	비고
◦ 구조개선 대상 어업으로 지정할 때 단체 대표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동해구 기저 수협)	◦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어업구조개선 대상 어업의 종류를 지정할 때는 미리 해당 어업인 단체 및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반영(안 제10조제2항)	

◦ 입법예고 의견 수렴결과(10.15 ~ 11.05)

제출의견	검 토 의 견	비고
<p>○ 정부 직권 구조조정은 충분한 보상과 선주 및 어선원들의 생계지원 등 정부지원금 현실화 필요 (수협중앙회, 및 일부 업종별 수협)</p>	<p>○ 정부지원금 현실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어선감척사업의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 :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에서 입찰제 적용(연안어업은 100%범위에서 입찰제) • 어업종사자 : 지원은 없음 다만, 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척사업의 경우 통상임금 6월분의 실업지원금 지원 - 동 법률 제정시 지원금(안 제15조,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업자: 어선·어구의 잔존가액+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대상 모든 어업) • 어업종사자: 일정기간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다만, 어업협정으로 인한 감척사업의 경우 통상임금 6월분 지원 •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시책 강구 ※ 현행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우리나라 모든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의 경우 토지 등(허가어업 포함)을 합의 또는 수용 보상시 어선·어구+ 평년수익액의 3년분을 보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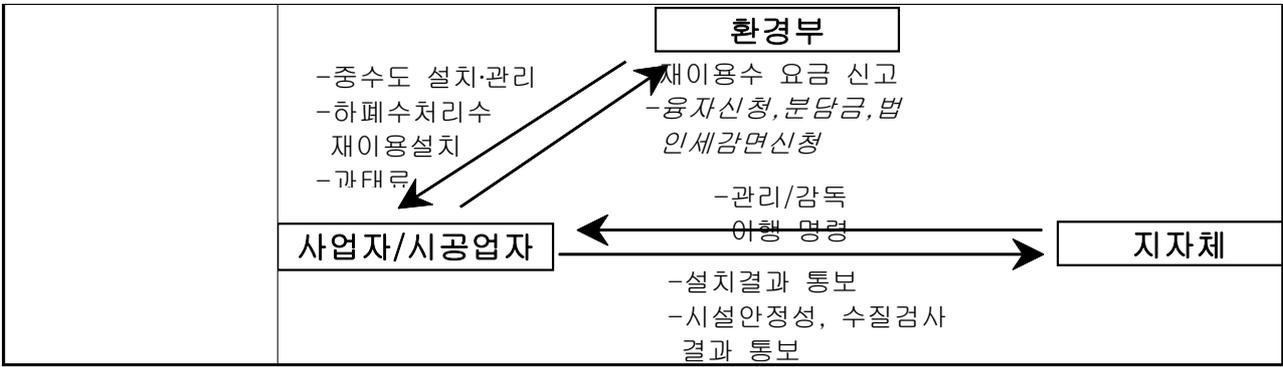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어선감척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 조직과 그간 축적된 Konw-how 등 행정체계를 이용, 기술적 및 행정적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 어업인의 자발적 사업참여와 함께 병행추진되는 사업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규제영향분석 우수사례(작성예시4)>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미등록'으로 기재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중수도시설 설치 대상 및 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 상하수도 정책관 ○○○, 물산업육성과장 ○○○ ○ 환경경제학회 △△△ 교수(규제영향분석 용역수행)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100여개 회원사		서면		시공자격범위 확대			
		한국토지공사	생략		서면		사업확대			
		산업단지공단	생략		서면		설치비지원 등			
		피규제자 총수/ 피규제기업수	약 120개 기업		-		-			
	이해관계자	환경관련단체	3개단체, 200명		공청회		사업확대 등			
	관련부처	국토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지경부		생략		서면		이의없음				
공정위, 중기청		생략		서면		이의없음				
*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 협회 회원 기업 현황(규모별, 자본금 기준, 매출액 기준 등 통계자료 보완)										
5. 규제존속기한	○ 5년 시행후 재검토 - 중수도 시설 설치후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및 물절약 성과, 그로 인한 기업의 비용 상계 요인 등을 종합검토하여 의무설치 대상의 확대·축소 여부를 재검토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현행규제(하수도법 제26조)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연면적 6만㎡ 이상의 목욕장업·숙박업, 1일 폐수 배출량 1,500㎡ 이상인 시설물) 신축시 중수도 시설 설치 의무 ○ 강화규제 (제정안 제##조) - 중수도 시설 설치의무 대상 확대 △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과 개발사업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로 물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수자원으로 향후 물 공급의 지역적인 불균형 전망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인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댐/저수지의 공급확대의 곤란 및 기후변화로 인한 특정시기에 집중된 강수와 연중강수량의 감소로 인한 일부 지역의 겨울가뭄의 상시적 발생 등
 - 최대가뭄년 기준 각 지역의 물 부족량의 합은 2011년 797백만톤, 2016년 975백만톤 부족 전망
(단위 : 백만 m^3 /년)

구 분	2006		2011		2016		2020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최대가뭄년	평균년
용수수요량	34,378	34,378	35,498	35,498	35,800	35,800	35,568	35,568
- 생활용수	7,877	7,877	8,103	8,103	8,180	8,180	8,195	8,195
- 공업용수	2,787	2,787	3,178	3,178	3,562	3,562	3,422	3,422
- 농업용수	15,977	15,977	15,849	15,849	15,690	15,690	15,583	15,583
- 유지용수	7,737	7,737	8,368	8,368	8,368	8,368	8,368	8,368
용수공급량	33,975	34,378	35,158	35,498	35,300	35,800	35,129	35,568
과 부 전국	$\Delta 403$	-	$\Delta 340$	-	$\Delta 500$	-	$\Delta 439$	-
족량 지역별	$\Delta 846$	$\Delta 206$	$\Delta 797$	$\Delta 193$	$\Delta 975$	$\Delta 205$	$\Delta 925$	$\Delta 210$

- 1) 물 부족량은 최대가뭄년(1988년)과 평균년(1974년)에 대하여 평가
- 2) 전국 부족량은 인접유역 잉여수자원을 활용하여 물 이동을 했을 때의 부족량임

- 우리나라의 하천 취수율은 36% 수준으로 가뭄시 물이용에 특히 취약

하천 취수율	물 스트레스 구분	국가
10% 이하	低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등
10 ~ 20%	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 ~ 40%	中 ~ 高	한국 , 인도, 이탈리아, 남아공 등
40% 이상	高	이라크, 이집트 등

(출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7)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용수를 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한 상수도 용수를 관련 규정의 미비·부실한 지원 등으로 재활용 없이 낭비하고 있는 실정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정책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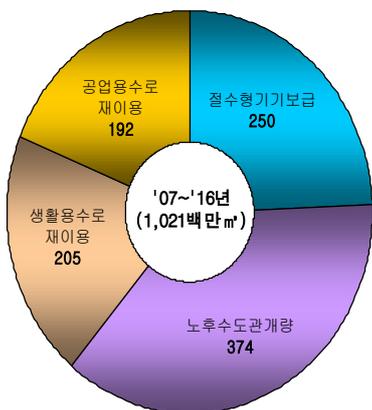
◇ 물재활용 촉진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빗물과 하·폐수 처리수등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등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 더불어, 처리된 하·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지 않고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하천 유입 오염 총량을 줄여 하천 수질의 개선에 기여

◇ 국가 물 수급계획을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강화로 전환

-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해양부)의 중장기 국가 물 수급 전망 수립시 물 재이용에 따른 절감량을 고려하여 물 수요량을 산정하고 있음
 - 대규모 댐, 저수지 추가 건설 등 공급확대는 쉽지 않은 여건
- 국가 물 수요관리종합대책(환경부)의 2016년까지 물 수요관리 목표량 10.2억톤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물 재이용을 추진
 - 목표량 1,021백만톤 - 물 재이용 397, 노후수도관 개량 374, 절수기기 보급 250

(단위 : 백만m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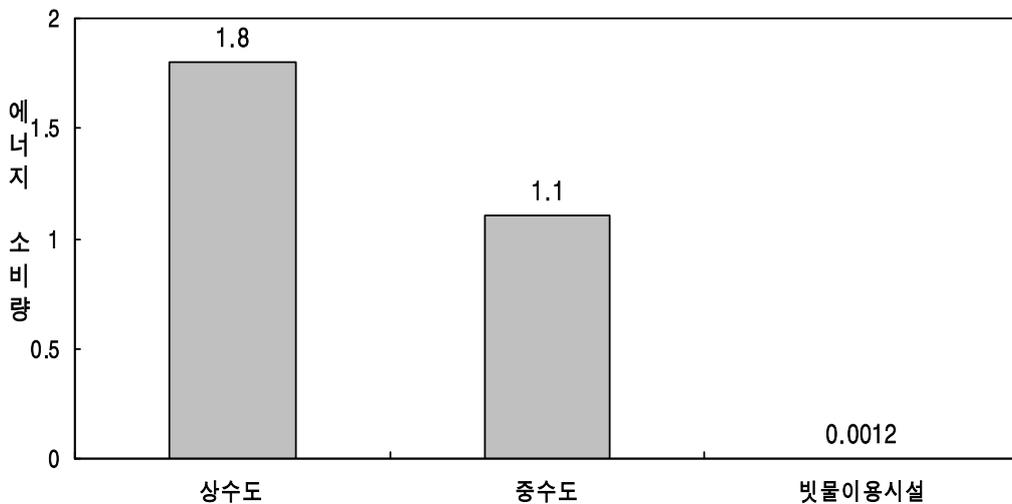
구 분		'07~'16	비 율
계		1,021	100.0%
노후수도관 개량		374	36.6%
절수형 기기 설치·보급		250	24.5%
절수설비 설치		112	11.0%
절수형 사용기기 보급	절수형세탁기	109	10.7%
	식기세척기	29	2.8%
재이용	생활용수로 이용	205	20.1%
	공업용수로 이용	192	18.8%

* 물 절감 목표량 10.2억톤은 충남 보령댐(용수공급량 1.06억톤/년) 10개 대체 효과

◇ 기후변화대응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실천적으로 뒷받침

-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에 따라 기존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여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 물을 재이용할 경우 하천, 댐에서 취수량을 줄일 수 있어 물 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뭄에 대비할 수 있음
- 저 에너지 소비형 물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녹색성장을 실천
 - 현지에서 물을 공급(On-Site Water Supply)하는 재이용시스템은 기존의 장거리 물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

물공급 방법별 에너지 소비량(물1 m³ 생산 공급시)
(단위:kWh)



(출처 : 적극적인 빗물관리에 의한 기후변화적응방안, 서울대 한무영 2008.10)

□ 정부개입의 필요성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중수도 설치에 관한 규정은 1990년대까지는 권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2008년 현재 총 204개소에 설치, [1,883천 m³/일]의 물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 국가 물절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별 시설단위의 규제에서 물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등)에 대해 중수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
- 물 재이용 산업은 현실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창출·성장**하는 정부정책 의존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
 - 특히 다량 물 사용 사업장은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지만, SOC사업처럼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여 **재이용시설 설치기피**
- ☞ 물 재이용 시장의 수요 창출과 물 재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불가피 (다만, 초기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병행)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물 재활용과 관련된 비규제 대안으로는 ▲정보제공(각종 캠페인, 공익광고 등), ▲보조금 지원, 저리 융자 등을 포함한 경제적 유인,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장에서 중수도를 이용한 물재이용 수요가 자연스럽게 창출되게 하는 대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비규제 대안은 현재도 활용하고 있으며, 신설되는 규제에서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나, 다만, 비규제 대안들만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초기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는 문제해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노정
 - 특히,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시장원리에 따라 물 재이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으나,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가격(수도요금)의 자율 결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필요
 - * 수도요금은 지방의회에서 결정되며, 전국의 수도요금(577.3원/㎥, '06년)은 생산원가(704.4원/㎥)의 82.0%, 하수도요금은 240.6원/㎥으로 생산원가(416.1원/㎥)의 57.8%에 불과
- ☞ 따라서,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한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고, 기타 검토 가능한 비규제 대안은 동 제정안의 강화규제와 동시에 추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금번 규제안의 특징임

□ 해외 사례

◇ 미국은 연방정부가 198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선도

○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매우 적극적이며, 연방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 재이용에 관한 규정(State Regulation)과 지침(Guidelines)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04년 현재 California, Florida 등 25개 주에서 물의 재이용에 관한 규정(State Regulation)과 16개 주에서 지침(Guidelines) 또는 설계기준을 보유하고 있음

※ 미국은 재이용수 활용에 대한 제도적 틀 하에서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재이용수를 사용해야 하며, 재이용시설 설치 등에 재정지원을 함

○ 건설비의 자원조달

- 건설비 및 부대비용의 대부분은 장기채권(long-term revenue bonds)으로 조달하며, 보충재원으로 연방·주정부의 교부금(grants)과 융자금(State revolving funds loans), 개발기부금(capital contribution) 지원

〈건설비 및 조달 자원 사례〉

* 세계에서 가장 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인 California Orange County의 GWR System

건설비 내역	비용 (백만불)	재원 구성	금액 (백만불)
처리시설	303.0	연방, 주정부 교부금(Grants)	92.5 (19%)
공급관로시설 (14마일)	74.5	· EPA	0.5
해수침투방지시설	16.6	· US Bureau of Reclamation	20.0
종합정보시스템, 감시정 등	14.8	· State Water Bond, California	37.0
현장전력설비	19.4	· 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5.0
기타 부대비용 등	58.6	· California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	30.0
		주정부 융자금(State Revolving Funds Loans)	145.0 (30%)
		채권, 기타 추가 교부금 등	249.4 (51%)
계	486.9	계	486.9

- 2004 ~ 2007년 까지 1단계 건설, 1일 최대공급용량 70mgd(33만톤/일)

* 처리공정 : 하수처리수(2차 처리)→ MF(정밀여과)→ RO(역삼투)→ UV(자외선)+H₂O₂→ 재이용

◇ 일본은 여러 부처에서 물재이용수 정책을 확대해 오고 있음

○ 중앙 정부내 여러 부서에서 중수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성 : 배수재이용의 배관설비 지침(1981), 하수처리수 순환이용 기술지침(1981)
- 통산성 : 잡용수를 공업용수의 10%내로 공급(1973) 및 10% 이상 확대(1979)
- 국토청 : 물 수급 사정이 어려운 지역의 관공시설물에 잡용수 이용 촉진(1978)
- 후생성 : 잡용수도의 수세 화장실용수의 잠정 수질기준 설정(1981)
- ※ 현재 일반용(목욕, 세탁, 청소·세차, 살수, 화장실용수), 공업용, 농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중수도 수질기준이 엄격히 설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중수도시책

- 후쿠오카시 : ‘절수형 수이용 등에 관한 조치요강’
- 카가와현 : ‘잡용수 이용 촉진 지도요강’
- 도쿄 : ‘잡용수 이용에 관한 지도지침’ -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 잡용수 이용시설의 설치를 촉진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검토

◇ 규제를 통한 초기 시장수요 창출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 경우 규제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

○ 대안① :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기존규제) 외에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가

대안② : 대안①과 대상 범위는 같으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

※ 초기 시설투자비 부담을 고려, 사업 주체가 민간인 경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

대안③ : 대안①과 대상 범위는 같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중수도 생산원가는 규모가 클수록 낮아지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정 규모를 정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300㎡/일 인 경우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중수도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환경부, 1999)

○ 대안 검토표

비고	대안 1	대안 2	대안 3
규제의 강도	○2001년 법시행이전에는 관련내용이 권장사항이었으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일정규모나 특정사업의 경우 의무화 할 필요	○좌동	○좌동
규제의 방식 (포지티브 방식)	○시설 설치 의무를 일정규모나 특정사업에 한정하여 부과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좌동	○작위의무부과 이므로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 장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이 있음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물이나 특정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미설치 대상자와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나, -초기투자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 *민간사업자의 현황 등 통계자료가 있을경우 보완	○특정 사업 시행자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여 기존 규제 외에 민간사업자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우지 않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이견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예외적인 경우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중소 시행사에게는 과도한 비용을 유발할 수 있음 -초기투자비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를 통해 문제 해결 가능 *민간중소 시행자의 현황 등 통계자료가 있을 경우 보완	○기존 규제외에 추가적으로 중소시행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중소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추가적인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
○중소기업청(이견없음)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과의 상충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정거래위(이견없음)			
다양한 의무 이행방법 검토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결	○ 민간사업자 특히 중소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우선 특정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인 경우 우선 시행하는 대안 3 를 우선도입하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안 검토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대안 1, 2)

① 중수도 설치 의무 확대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대안①)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 연구용역 : (사)한국환경경제학회('07.7.13~'07.8.26)>

가. 규제의 비용

○ 규제의 강화로 인한 중수도 이용수량 증가

- 2005년 기준 중수도 이용수량은 313천톤/일로써, 최근 5년간('01~'05년) 평균 중수도 이용수량 증가율은 9.8%
- 강화규제 적용(2009년) 이후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기존 증가율(9.8%)에 추가 증가율(4.88%로 가정)을 합한 14.64%
- 이후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절반 수준(7.32%), 그 이후 10년간 평균 증가율은 앞 시기의 절반 수준(3.66%)로 상정
- 30년간 중수도 이용수량 증가는 2009년 474천톤/일에서 2038년 4,711천톤/일로 약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

○ 중수도 처리비용

-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3가지 중수도 공법(장기폭기식, 미생물첨가방식, 한외여과법)과 평균 중수도 이용량인 2,000톤 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합한 톤당 처리비용은 540원('06년 환산)임 - 「중수도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1999, 환경부)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우, 2009년 부터 30년간 발생하는 총 비용은 2,821억원,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89억원임

나. 규제에 따른 편익

- 중수도 설치로 인한 편익으로는 상수도생산원가의 절감액과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 절감액을 합한 금액임(직접편익)

항 목	(비용절감) 편익
상수도 생산비 절감 편익	680원/톤
물이용부담금 절감 편익	140원/톤
편익 합계	680원/톤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2009년부터 30년동안 발생하는 총편익은 4,287억원, 2006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총 1,504억원에 해당함

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중수도 시설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리하면 30년 동안 편익의 현재가치의 총합은 1,504억원이며, 비용과 현재가치의 총합은 989억원으로 순편익의 현재가치의 총합은 514억원 임

<중수도 확대에 따른 비용 및 편익>

(단위 : 백만원)

2009 ~ 2038	편 익		비 용		순편익 (누적 현재가치)
	경상가치	현재가치	경상가치	현재가치	
합계	428,748	150,447	282,119	·98,995	51,452

- 중수도 시설 확대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중수도 시설 확대 정책의 비용과 편익 비율(B/C)은 1.52로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큼

② 중수도 설치 의무 확대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대안②, ③)

- 대안 ①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바탕으로 대안 ②, ③의 경우 중수도 설치 의무 대상이 각각 30%, 45%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용·편익이 조정됨

2009 ~ 2038	편 익		비 용		순편익 (누적 현재가치)
	경상가치	현재가치	경상가치	현재가치	
대안 ②	350,201	123,356	195,209	·69,297	54,059
대안 ③	258,748	110,900	155,219	·54,448	56,452

- ☞ 대안 ③이 비용·편익 비율이 가장 높음

〈중수도 경제성분석 - 설치사례 중심〉

구 분		강남우체국 (서울)	분당벤처타운 (성남)	롯데백화점 (전주)	인터콘티넨탈 호텔(서울)	롯데백화점 (인천)
비용	시설용량(㎡/일)	100	170	200	300	300
	총공사비(천원)	281,577	544,947	505,967	852,000	672,549
	자본회수	28,974	56,064	52,064	87,670	69,205
	연간비용 (유지관리+기회)	30,200	37,434	42,500	66,165	57,165
	총비용(C)	59,174	93,498	94,564	153,835	126,370
편익	수도요금	24,114	71,604	113,538	133,560	133,344
	하수도요금	10,638	27,930	43,002	76,310	83,861
	물이용부담금	4,320	7,344	6,801	12,960	12,960
	환경개선부담금	9,937	5,664	6,713	32,417	15,660
	총편익(B)	49,009	112,542	170,055	255,248	245,826
경제성(B/C)		0.8	1.2	1.8	1.7	1.9

주) 자본회수 : 년리 6%, 내용연수 15년, 현재가계수 0.1029

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 시설용량 100 ~ 300㎡/일 중수도 5개소에 대한 경제성 검토결과

- B/C 0.8 ~ 1.9 범위로 시설용량 150㎡/일 이상일 경우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순이익이 발생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미국·일본 등 해외선진국의 현황 및 그간 추진연혁과 설치가 의무화 되는 사업의 규모와 초기투자비에 대한 정부지원 등에 비추어 볼때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한 동 규제가 지나치거나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내의 적정한 규제로 판단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1980년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선도중이며 2004년 현재 25개주에서 물의 재이용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16개 주에서는 지침 또는 설계기준 보유
- 일본의 경우 건설성, 통산성 등 여러부처에서 물재이용수 정책을 확대추진 중이며 동경을 포함한 지방자치 단체차원의 중수도 시책사례도 있음

3-2. 이해관계자 협의

○ 피규제자,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

법률안 (물의순환이용촉진법)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p>제17조(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①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하 '재이용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9조(재이용사업자의 자격 등) ①재이용사업을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p>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용도별 이용범위와 수질기준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타인에 대해 <u>재산상 또는 건강상의 피해</u>를 초래한 자 2.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p>	<p><법무부> ○ 제17조제1항의 “재이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 제1항의 “재이용사업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개념상 상이한 내용인지 동일한 내용인지 불분명하므로 명확한 구분 필요</p> <p>○ 구성요건 중 “재산상 혹은 건강상 피해 초래” 부분은 범위 및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입증에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기준 초과시 일응 피해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객관화하는 방안을 고려함이 바람직</p>	<p><반영> ○ 재이용사업 계획에 대하여 인가, 재이용설계·시공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문구를 수정</p> <p><반영> ○ 관련 벌칙 조항을(제27조 제1호) 삭제하되, 재이용범위와 수질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로 전환</p>

법률안 (물의순환이용촉진법)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p>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이용 사업을 경영한 자</p> <p>3. 제19조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u>재이용사업을 영위한 자</u></p>	<p>○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도 행위의 태양 및 죄질에 비추어 제27조제2 및 제3호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거나 적어도 과태료로 의율할 필요성이 있음</p>	<p>〈반영〉</p> <p>○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경우’도 벌칙에 추가</p>
<p>제2조(정의)</p> <p>나. "빗물저류·침투시설"이라 함은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을 말한다.</p> <p>제14조 (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등)</p> <p>④빗물저류·침투시설의 종류·규모·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소방방재청〉</p> <p>○ ‘빗물저류·침투시설’ 용어의 정의를 달리 표현 - 자연재해대책법의 우수유출저감시설과 동일</p> <p>○ 빗물저류·침투시설과 자연재해대책법의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중복설치 우려</p>	<p>○ 빗물저류·침투 관련 조항 삭제</p> <p>○ 빗물저류·침투 관련 조항 삭제</p>
	<p>〈건설교통부〉</p> <p>○ ‘물의 순환’이라는 용어는 자연적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인위적인 빗물이용, 중수도, 하수재이용 등 물의 재사용에 관한 입법제목으로는 부적합</p> <p>○ 정부조직법상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는 건교부 소관이며, 빗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p>	<p>〈수정반영〉</p> <p>○ ‘물의 순환’은 자연적 순환과 인공적 순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물의순환이용’용어 대신 ‘물의 재이용’으로 법제명을 수정</p> <p>〈수정반영〉</p> <p>○ 현재 빗물관리 업무는 환경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등 여러 부처에</p>

법률안 (물의순환이용촉진법)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리는 건교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	<p>서 수행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은 현행 ‘수도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고 있음 * 빗물의 침투·저류시설은 여러 부처에서 관련되어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함
③빗물저류시설인 경우 이를 빗물이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p>〈서울특별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저류시설의 빗물이용시설로의 활용 의무화 삭제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용적률 등의 완화 규정 신설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저류시설의 경우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p>〈원안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
<p>제1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대형상업용업무용빌딩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자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p> <p>제14조(빗물저류·침투시설의 설치 등)① 다음 각호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빗물저류·침투 시설을</p>	<p>〈한국오수처리설계·시공업 협회/ 물 재이용 협의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의 자격 명시가 없어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 명시 필요(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개인하수처리설계 시공업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 빗물저류·침투 시설 설치자의 자격 명시가 없어 부실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 명시 필요 	<p>〈원안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의 수처리 공정을 거치는 시설이 아니며 자격제한은 과도한 규제로서 불필요 ○ 빗물저류·침투 관련 조항 삭제

법률안 (물의순환이용촉진법)	관계기관 의견	반영여부
<p>설치하여야 한다</p> <p>제15조(중수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 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p> <p>제19조(재이용사업자의 자격 등)①재이용사업을 업으로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개인하수처리설계 시공업 또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업 ○ 고도의 처리공법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중수도설계 시공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꼭 필요함. - 일반건설업종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업 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업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은 반드시 수질전문성 있는 개인하수처리설계시공 혹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병합한 자격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전문건설업자 만으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운용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질처리 전문 업종과 병합하여야 함(수질방지시설업 혹은 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업 추가)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시공 자격설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술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격 제한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p><수정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수질분야 방지시설업 추가.
<p>제16조(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p> <p>①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서 영위하려는 자는 <u>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하여야 한다.</p>	<p><한국생활하수처리 협회></p> <p>제16조(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p> <p>①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서 영위하려는 자는 <u>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u>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 생략)</p>	<p><원안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 제한적이며 과도한 규제임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기술적 집행가능성

- 중수도의 경우 현재도 204개소에서 설치 운영중이며, 관련 시공업협회가 존재하는 등 시설설치, 수질 기준 유지 등이 기술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중수도설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경우 중수도 설치시 50억 범위내에서 환경개선자금 저리 융자, 환경개선분담금 감면(25%범위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 감면(투자비의 20%)을 위한 부처협의·관련 제도정비 완료
- 관리·감독업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 총 204개소 정도에만 설치되어 추가로 증가된다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업무 부담은 미미하여, 추가적인 인력확보 및 예산 이관 등의 조치는 불필요